

신한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를 감안하여 **2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펀드의 위험등급은 운용실적, 시장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신한마음편한RIF2040월배당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한마음편한RIF2040월배당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증권신고서 또는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신한마음편한RIF2040월배당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2. 집합투자업자 명칭	신한자산운용(주)
3. 판매회사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집합투자업자 (www.shinhanfund.com)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작성 기준일	2026년 08월 19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2026년 09월 04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모집 또는 매출총액)	투자신탁의 수익증권(10조좌)
7. 모집(매출)기간(판매기간)	**2026년 09월 04일(예정)부터 투자신탁 해지일까지**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dart.fss.or.kr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dart.fss.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www.shinhanfund.com) ,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 이 투자설명서는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간이투자설명서의 경우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실행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7.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8.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금액보다 실수령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9.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10. 이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하위 집합투자기구가 외국집합투자기구인 경우 해당 국가에서 적용되는 법령 등에 따라 일부 기재항목의 기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하여 기재가 생략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대신 기재될 수 있으니 투자판단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11.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투자자의 국적상 국가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2.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3. 이 투자신탁은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서 환율변동위험에 대한 헤지를 실행하지 않기 때문에, 외국통화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환율변동에 따른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14. 최초 설정일 이후 6개월이 되는 날에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수익자총회 없이 신탁계약 변경을 통하여 "신한마음편한적격TDF2040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의 자투자신탁으로 전환합니다.

15. 이 투자신탁은 매월 분배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함을 목적으로 운용됩니다. 다양한 경제변수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투자신탁의 특성상 분배금은 확정된 수익이 아니며 변동될 수 있고, 분배금 지급방식 및 가입시기에 따라 투자원금액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규모는 지속적인 월분배로 인해 소규모화 될 수 있고, 이로 인해 효율적인 운용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배금 지급일 도래 전 대량설정 혹은 대량환매 등으로 인하여 이 투자신탁의 순자산총액이 급변동할 경우 분배금 지급일에 실제 지급되는 분배금이 예상보다 적거나 많을 수 있으며, 배당재원이 부족할 경우 배당금이 줄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분배금 지급으로 인한 과세이익에 대해 매월 단위로 원천징수 되므로 1년에 한번 분배금을 지급하는 일반 펀드와 비교하여 과세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16. 이 투자신탁은 펀드 운용성과를 바탕으로 매월 분배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운용됩니다. 다만 해당 기간의 투자수익이 목표 분배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투자원금을 처분하여 분배금 지급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장의 하락 국면에서 평가손실이 지속되는 가운데 분배금 지급을 위해 보유자산을 매각하여 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 과정에서 평가손실을 확정하며 원본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시장상황이 지속될 경우 투자자는 원본을 영구적으로 고갈 시킬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투자설명서 목차]

● 요약 정보 - 예비간이투자설명서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 및 전환 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 용어정리

요약 정보

<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 2026.08.19

신한마음편한RIF2040월배당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펀드코드 : EY913]



신한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를 감안하여 2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원본 손실 위험, 증권 등 가격변동위험, 파생상품투자위험, 국가 위험,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 재간접 투자위험, 자산배분 위험, 시장 위험 및 개별위험, 월 분배금 지급에 따른 위험, 지속적인 분배금 지급에 따른 투자원본 고갈 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신한마음편한RIF2040월배당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2. 투자전략

(1) 기본 운용전략

- 이 투자신탁은 노후대비를 위한 안정성 있는 현금 흐름 설계를 목표로 하는 RIF(Retirement Income Fund)*펀드로서, 위험자산 모펀드(국내외 주식, 해외 채권, 리츠 등 다양한 자산에 분산투자하여 최적의 위험조정수익 추구)와 안정적 자산 모펀드(변동성 대비 기대수익률이 안정적인 국내외 단기채권 투자로 꾸준한 수익 추구)를 맞춤형으로 자산배분 설계를 하여 안정적 소득 흐름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목표 인출 종료시점(이 투자신탁의 경우 2040년) 이후에는 위험자산 모펀드의 비중을 축소하고, 안정적 자산 모펀드에의 비중을 확대하는 운용전략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 이 투자신탁은 매월 분배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운용되는 투자신탁으로 매월 분배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함을 목적으로 운용됩니다.

*RIF(Retirement Income Fund,은퇴소득펀드): 은퇴 이후 자산 인출기에 들어선 투자자를 위해, 은퇴 자산의 조기 소진을 방지하면서 안정성 있는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자산배분펀드입니다.

[모투자신탁 투자대상 예시]



투자대상	신한마음편한RIF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주식	미국주식 (S&P500, NASDAQ100, Value, Growth, AI, 반도체 등) 유럽주식 (Eurostoxx50, 럭셔리, 산업재, 방산 등) 일본주식 (Nikkei225, 로봇, 반도체 등) 신흥국 주식 (대형코어, 인터넷, 소비재, 금융 등) 한국주식 (대형코어, 방산, 조선 등) 아시아주식 (코어, AI인프라 등)
채권	신흥국 채권 미국 단기 하이일드
대체자산	리츠 인프라 금/금광주



투자대상	신한단기국공채 증권모투자신탁[채권]	신한베스트크레딧단기 증권모투자신탁[채권]	신한달러단기자금 증권모증권투자신탁(USD)[채권]
	국공채 중심 투자와 우량채권, 예금담보 CP와 같은 안전자산 투자	기업의 펀더멘털을 면밀히 분석, 가치에 비해 저평가된 신용 채권(A- 이상) 투자하는 단기채권펀드	단기 미국채(T-bill), 달러표시 한국채권(단기 KP물) 중심 운용으로 변동성 대비 높은 수익 추구
	듀레이션 1년~1.5년	듀레이션 1년 내외	듀레이션 0.5년 내외

※ 상기 모투자신탁은 변경될 수 있으며, 모투자신탁의 운용전략 또한 현재 기준이며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그러나 상기의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상기 기본 운용전략 외에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다양한 국내외 집합투자증권에 분산투자되며, 자산별 비중이 조정되므로 특정한 비교지수를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2)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모투자신탁 명칭	주요 투자전략	투자비중
신한단기국공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국채, 통안채, 공사채, 지방채 등 국공채에 투자합니다. 잔여 투자신탁재산은 어음 및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하여 운용을 할 계획입니다.	100% 이하
신한베스트크레딧단기증권모투자신탁[채권]	이 투자신탁은 60% 이상을 국내 채권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잔여 투자신탁재산은 양도성예금증서 등의 유동성 자산에 투자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100% 이하
신한달러단기자금증권모투자신탁(USD)[채권]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미국 단기 국채 및 미국달러(USD)표시 채권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	100% 이하
신한마음편한RIF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재산의 대부분을 국내외 펀드, ETF 및 직접투자방법 등을 통해 전통자산(주식, 채권 등) 및 대체자산(리츠/인프라/금/기타 등)에 투자하는 운용전략을 수행합니다.	95% 이하

분류

투자신탁, 증권형(혼합주식-재간접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추가납입가능), 종류형, 모자형

투자비용

클래스 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연)보수 및 비용 (%)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 (단위:천원)				
	판매 수수료	총보수	판매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총보수 비용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선취 - 오프라인(A1)	납입금액의 1.000% 이내	0.8200	0.4200	0.8600	0.8200	183	269	359	550	1,102
수수료미징구 - 오프라인(C1)	없음	1.2000	0.8000	1.2100	1.2000	122	249	381	659	1,452
수수료선취 - 온라인(A-e)	납입금액의 0.500% 이내	0.6100	0.2100	0.5800	0.6100	112	177	244	388	808
수수료미징구 - 온라인(C-e)	없음	0.8000	0.4000	0.7500	0.8000	82	167	255	444	989

(주1)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로 가정하였습니다.

(주2) 종류 A1형과 종류 C1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6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며 종류 A-e형과 종류 C-e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6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3) 상기 종류 수익증권을 제외한 나머지 종류 수익증권에 대해서는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5)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주6) 총 보수 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자투자신탁의 경우 해당 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포함)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설정 전이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1) 신한마음편한RIF2040월배당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2026.07.31 현재)

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해외-재간접형)				운용 경력 년수
			집합투자기구 수	운용 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김의찬	1984	책임운용역	39개	20,146억원	21.32%	16.71%	12.53%	11.18%	12년 6개월
이예진	1997	부책임운용역	1개	80억원	7.95%	6.57%			3년 6개월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멀티에셋운용팀에서 담당하며,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상기운용역 부재시 등의 경우 멀티에셋운용팀내 다른 운용역의 운용도 가능합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4)'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주5) 위의 수치 산정 시 모자형구조의 투자신탁의 경우 모투자신탁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2026.07.31 현재)

*** 신한단기국공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국내-채권형)				운용 경력 년수
			집합투자기구 수	운용 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김재정	1973	책임운용역	56개	17,779억원	-1.53%	1.24%	-0.03%	1.7%	20년 5개월
정지원	1983	부책임운용역	53개	16,698억원	-1.53%	1.24%			15년 8개월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채권투자운용본부장, 채권운용3팀에서 담당하며,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 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상기운용역 부재시 등의 경우 채권투자운용본부장, 채권운용3팀내 다른 운용역의 운용도 가능합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4)'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주5) 위의 수치 산정 시 모자형구조의 투자신탁의 경우 모투자신탁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운용전문인력

*** 신한베스트크레딧단기증권모투자신탁[채권]**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국내-채권형)				운용 경력 년수
			집합투자기구 수	운용 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김재정	1973	책임운용역	56개	17,779억원	-1.53%	1.24%	-0.03%	1.7%	20년 5개월
정지원	1983	부책임운용역	53개	16,698억원	-1.53%	1.24%			15년 8개월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채권투자운용본부장, 채권운용3팀에서 담당하며,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 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상기운용역 부재시 등의 경우 채권투자운용본부장, 채권운용3팀내 다른 운용역의 운용도 가능합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4)'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주5) 위의 수치 산정 시 모자형구조의 투자신탁의 경우 모투자신탁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운용전문인력

*** 신한달러단기자금증권모투자신탁(USD)[채권]**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해외-채권형)				운용 경력 년수
			집합투자 기구 수	운용 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강판석	1984	책임운용역	9개	14,162억원	7.28%	7.16%	6.1%	5.67%	12년 11개월
김영강	1990	부책임운용역	10개	10,565억원	7.28%	7.16%			3년 9개월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글로벌채권운용팀에서 담당하며,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상기운용역 부재시 등의 경우 글로벌채권운용팀내 다른 운용역의 운용도 가능합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4)'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주5) 위의 수치 산정 시 모자형구조의 투자신탁의 경우 모투자신탁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신한마음편한RIF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해외-재간접형)				운용 경력 년수
			집합투자 기구 수	운용 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김의찬	1984	책임운용역	39개	20,146억원	21.32%	16.71%	12.53%	11.18%	12년 6개월
이예진	1997	부책임운용역	1개	80억원	7.95%	6.57%			3년 6개월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멀티에셋운용팀에서 담당하며,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상기운용역 부재시 등의 경우 멀티에셋운용팀내 다른 운용역의 운용도 가능합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4)'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주5) 위의 수치 산정 시 모자형구조의 투자신탁의 경우 모투자신탁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경우,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최초 설정일 이후 6개월이 되는 날에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수익자총회 없이 신탁계약 변경을 통하여 "신한마음편한적격**

투자자 유의사항

TDF2040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의 자투자신탁으로 전환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매월 분배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함을 목적으로 운용됩니다. 다양한 경제변수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투자신탁의 특성상 분배금은 확정된 수익이 아니며 변동될 수 있고, 분배금 지급방식 및 가입시기에 따라 투자원금액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규모는 지속적인 월분배로 인해 소규모화 될 수 있고, 이로 인해 효율적인 운용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배금 지급일 도래 전 대량설정 혹은 대량환매 등으로 인하여 이 투자신탁의 순자산총액이 급변동할 경우 분배금 지급일에 실제 지급되는 분배금이 예상보다 적거나 많을 수 있으며, 배당재원이 부족할 경우 배당금이 줄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분배금 지급으로 인한 과세이익에 대해 매월 단위로 원천징수 되므로 1년에 한번 분배금을 지급하는 일반 펀드와 비교하여 과세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은 펀드 운용성과를 바탕으로 매월 분배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운용됩니다. 다만 해당 기간의 투자수익이 목표 분배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투자원금을 처분하여 분배금 지급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장의 하락 국면에서 평가손실이 지속되는 가운데 분배금 지급을 위해 보유자산을 매각하여 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 과정에서 평가손실을 확정하며 원본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시장상황이 지속될 경우 투자자는 원본을 영구적으로 고갈 시킬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를 참고 바랍니다.

주요 투자 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원본 손실 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증권 등 가격 변동위험	투자대상 증권의 발행회사 영업환경, 재무상황, 신용상태 악화 및 시장에서의 증권 수급상황 등의 이유로 인해 투자대상 증권의 가격하락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파생상품은 적은 원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효과(레버리지)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국가 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해외 자산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 대상 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더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자산 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 및 환율 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전반적인 투명성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 일부 시장의 증권은 외국인의 투자 한도, 넓은 매매호가 차이, 거래소의 제한된 개장시간과 거래량 부족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유동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고, 가격변동의 위험이 더 클 수 있으며 환매가 정지될 수 있는 위험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	해외투자 자산은 필연적으로 국내통화와 투자대상국 통화와의 환율변동에 따르는 위험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환율변동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타 환율변동 관련 위험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환위험관리**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해외 통화로 거래되는 해외집합투자증권 등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자산을 편입하는 경우 이 투자신탁은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됩니다.** **그러나 일부 모투자신탁에서는 거래비용과 유동성을 고려하여 외화표시자산 일부에 대해 환헤지 전략을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이 투자신탁에서는 일부 환율변동위험을 줄일 수 있으나, 완전히 상쇄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주가변동, 환율변동 및 외환시장 등의 상황에 따라 실제 헤지비율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신한달러단기자금증권모투자신탁(USD)[채권] 이 투자신탁은 미국달러(USD) 표시 외의 채권 자산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자산을 편입하는 경우 이 투자신탁은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됩니다. 이러한 환율변동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이 투자신탁은 미국달러(USD)외의 통화에 대해 거래비용과 유동성을 고려하여 파생상품을 이용한 환헤지를(90% 수준 이상) 실행합니다. ▶ 신한마음편한RIF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이 투자신탁은 해외 통화로 거래되는 해외집합투자증권 등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자산을 편입하는 경우 이 투자신탁은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됩니다. 이 투자신탁은 이러한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는 투자대상자산 중 선진국 통화표시 채권에의 투

		자는 원화 환율변동 위험에 대해 거래비용과 유동성을 고려하여 파생상품을 이용한 환헤지를 실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담당운용역은 향후 거래비용과 유동성,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환헤지 전략의 효과적인 수행이 어렵거나 운용전략 측면에서 환헤지를 수행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환헤지를 수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선진국 주식 또는 신흥국 통화표시 자산에는 환율변동위험에 대한 헤지를 실행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러나 환율변동 및 금융시장 등의 상황에 따라 환헤지를 통한 환율변동위험 축소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담당 운용역은 환헤지를 일부 실행하여 환율변동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환헤지 관련 자세한 사항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간접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타 집합투자증권의 순자산가치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노출됩니다. 또한 주로 타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기 때문에 타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기간 내 불가피하게 중도 환매를 할 경우 환매수수료 부담이 발생하여 당해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를 하락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투자신탁보다 일반적으로 환매기간이 더 소요됩니다. 집합투자증권은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정기간의 시차를 두고 평가에 반영이 됩니다. 그 결과 당해 투자신탁에 대하여 매입 청구 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일정기간 이전 가격으로 평가된 가격입니다. 주요 투자대상인 타 집합투자증권은 개별적인 운용전략하에 운용되며 개별적인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해 운용사의 정책 및 전략에 따라 그 세부내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타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직접 자산을 투자하는 투자신탁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기회비용과 손실을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
	자산배분 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국내 · 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자산별 편입비율을 조절하는 자산배분전략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자산배분전략으로 인해 특정 자산의 손실이 확대되어, 펀드 전체의 손실이 예측한 규모 이상으로 커지거나 수익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어 일반 투자신탁에 비해 더 큰 변동성 및 투자원금의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장 위험 및 개별위험	이 투자신탁은 해당 증권시장 전체의 가격하락, 이자율 변동 등 거시경제 지표의 변화 또는 정치,경제상황, 정부의 정책 변화 등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 위험에 노출됩니다. 경제성장률, 환율, 금리변동 등의 요인들은 주식시장 전체에 영향을 끼쳐 개별 주식가격의 등락을 초래하며 이는 투자신탁 재산의 가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 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편입 자산의 가격 변동에 의해 원금 손실을 입게 될 수 있습니다.
	월 분배금 지급에 따른 위험	이 투자신탁은 매월 분배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함을 목적으로 운용됩니다. 다양한 경제변수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투자신탁의 특성상 분배금은 확정된 수익이 아니며 변동될 수 있고, 분배금 지급방식 및 가입시기에 따라 투자원금액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규모는 지속적인 월분배로 인해 소규모화 될 수 있고, 이로 인해 효율적인 운용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분배금 지급일 도래 전 대량설정 혹은 대량환매 등으로 인하여 이 투자신탁의 순자산총액이 급변동할 경우 분배금 지급일에 실제 지급되는 분배금이 예상보다 적거나 많을 수 있으며, 배당재원이 부족할 경우 배당금이 줄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분배금 지급으로 인한 과세이익에 대해 매월 단위로 원천징수 되므로 1년에 한번 분배금을 지급하는 일반 펀드와 비교하여 과세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분배금 지급에 따른 투자원본 고갈 위험	이 투자신탁은 펀드 운용성과를 바탕으로 매월 분배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운용됩니다. 다만 해당 기간의 투자수익이 목표 분배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투자원금을 처분하여 분배금 지급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장의 하락 국면에서 평가손실이 지속되는 가운데 분배금 지급을 위해 보유자산을 매각하여 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 과정에서 평가손실을 확정하며 원본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시장상황이 지속될 경우 투자자는 원본을 영구적으로 고갈 시킬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기타 다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입방법	가. 17시 이전: 제3영업일 (D+2)의 기준가격을 적용 나. 17시 경과 후: 제4영업일 (D+3)의 기준가격을 적용	
환매방법	가. 17시 이전: 제4영업일(D+3)의 기준가격으로 제5영업일(D+4)에 지급 나. 17시 경과 후: 제5영업일(D+4)의 기준가격으로 제6영업일(D+5)에 지급	
환매 수수료	없음	

<table>
<tr><td rowspan="2">기준 가격</td><td>산정방법</td><td colspan="3">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1,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td></tr>
<tr><td>공시장소</td><td colspan="3">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shinhanfund.com),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인터넷홈페이지</td></tr>
<tr><td>과세</td><td colspan="4">투자자는 투자대상으로부터 발생한 이자, 배당 및 양도차익(해외주식 매매차익 포함) 등 과세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등(개인 및 법인 15.4%)을 부담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퇴직연금제도의 세제(퇴직연금 전용 종류 수익증권만 해당)
이 투자신탁은 퇴직연금 수령 시 관련 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 투자신탁 투자 시의 과세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연금저축 종류 수익증권만 해당)
이 투자신탁은 연금저축계좌 불입 금액의 수령 시 관련 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 투자신탁 투자 시의 과세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세제혜택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과세 내용이 달라 질 수 있으며 과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td></tr>
<tr><td>집합투자업자</td><td colspan="4">신한자산운용(주) (대표번호: 02-767-5777 / 인터넷 홈페이지: www.shinhanfund.com)</td></tr>
<tr><td>모집(판매)기간</td><td colspan="2">2026년 09월 04일(예정)부터 투자신탁 해지일까지</td><td>모집(매출)</td><td>투자신탁의 수익증권(모집(매출) 총액 : 10조좌)</td></tr>
<tr><td>효력발생일</td><td colspan="2">2026년 09월 04일</td><td>존속 기간</td><td>이 투자신탁은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td></tr>
<tr><td>판매회사</td><td colspan="4">집합투자업자(www.shinhanfund.com),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참고</td></tr>
<tr><td>참조</td><td colspan="4">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td></tr>
<tr><td rowspan="6">집합투자기구 의 종류</td><td colspan="4">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 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td></tr>
<tr><td colspan="2">종류(Class)</td><td colspan="2">집합투자기구의 특징</td></tr>
<tr><td rowspan="3">판매 수수료</td><td>수수료선취</td><td colspan="2">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1)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1)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6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2년6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1)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tr>
<tr><td>수수료후취</td><td colspan="2">집합투자증권 환매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1) 집합투자기구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됩니다.</td></tr>
<tr><td>수수료미징구</td><td colspan="2">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1)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1)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6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2년6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1)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tr>
<tr><td rowspan="2">판매 경로</td><td>온라인(e)</td><td colspan="2">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td></tr>
<tr><td>오프라인</td><td colspan="2">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td></tr>
</table>

집합투자기구 의 종류	판매경로	온라인슈퍼(s)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S 관련 클래스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다른 클래스(가입자격에 제한이 있는 클래스 제외)보다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기타	개인연금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고액,기관	기관투자자 또는 펀드가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고액거래자가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랩,기관	Wrap Account 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기관투자자 또는 펀드가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고유재산	이 투자신탁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업자의 계열금융회사 등이 매입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디폴트옵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중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shinhanfund.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shinhanfund.com)
- 수시공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shinhanfund.com)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칭(종류)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신한마음편한RIF2040월배당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EY913
수수료선취-오프라인(종류A1)	EY914
수수료선취-온라인(종류A-e)	EY91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종류C1)	EY917
수수료미징구-온라인(종류C-e)	EY91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기관(종류C-i)	EY92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종류C-p)	EY919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종류C-pe)	EY92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종류C-r)	EY921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종류C-re)	EY92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유재산(종류C-s)	EY92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기관(종류C-w)	EY92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디폴트옵션)(종류C-O)	EY926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종류S)	EZ090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종류S-P)	EZ091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종류S-R)	EZ092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형(혼합주식-재간접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

- 종류형(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투자신탁)

- 모자형(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구조의 투자신탁)

바. 고난도금융투자상품해당여부 : X (해당없음)

주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의 내용 중 "투자대상"과 "투자전략"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2) 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지칭합니다.

3. 모집예정금액

이 투자신탁은 10조좌까지 모집 가능하며, 1좌 (1좌=1원, 펀드설정일 기준) 단위로 모집합니다. 모집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주1) 모집(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2)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어들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1) 모집기간 : 2026년 09월 04일(예정)부터 투자신탁 해지일까지

(2) 모집장소 : 판매회사 본·지점

주1)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집합투자업자(www.shinhanfund.com)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2)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의 "11. 매입·환매 및 전환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 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 사항 없음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칭(종류)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신한마음편한RIF2040월배당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EY913
수수료선취-오프라인(종류A1)	EY914
수수료선취-온라인(종류A-e)	EY91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종류C1)	EY917
수수료미징구-온라인(종류C-e)	EY91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기관(종류C-i)	EY92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종류C-p)	EY919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종류C-pe)	EY92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종류C-r)	EY921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종류C-re)	EY92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유재산(종류C-s)	EY92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기관(종류C-w)	EY92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디폴트옵션)(종류C-O)	EY926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종류S)	EZ090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종류S-P)	EZ091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종류S-R)	EZ092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시행일	변경 사항
2026.09.00	최초 설정(예정)

주1) 상기 집합투자기구의 연혁은 최초 설정일을 포함하여 최근 5년 동안의 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1) 법령 또는 신탁계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의 내용 중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 사 명	신한자산운용(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6, TP타워 23~26층 (대표전화 : 02-767-5777, 홈페이지 : www.shinhanfund.com)

주1)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의 내용 중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2026.07.31. 현재)

가. 운용전문인력

(1) 신한마음편한RIF2040월배당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해외-재간접형)				운용 경력 년수
			집합투자 기구 수	운용 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김의찬	1984	책임운용역	39개	20,146억원	21.32%	16.71%	12.53%	11.18%	12년 6개월
	⊙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서울대학교 경제학 / University of Michigan 응용경제학 석사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부(09.11-12.07) 삼성화재 자산운용본부 일반계정운용파트(14.02-19.01) 신한 BNP파리바자산운용 솔루션운용팀(19.01-20.01)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글로벌투자운용본부(20.01-20.12)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글로벌멀티에셋팀(21.01-21.01) 신한자산운용 글로벌멀티에셋팀 (21.01-24.02) 신한자산운용 멀티에셋운용센터 (24.02-25.12) 신한자산운용 멀티에셋운용팀 팀장(26.01-현재)								
이예진	1997	부책임운용역	1개	80억원	7.95%	6.57%	12.53%	11.18%	3년 6개월
	⊙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경영학 신한자산운용 멀티에셋운용팀(2021.08~현재)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멀티에셋운용팀에서 담당하며, "책임전문운용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상기운용역 부재시 등의 경우 멀티에셋운용팀내 다른 운용역의 운용도 가능합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주5) 위의 수치 산정 시 모자형구조의 투자신탁의 경우 모투자신탁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 신한단기국공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국내-채권형)				운용 경력 년수
			집합투자 기구 수	운용 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김재정	1973	책임운용역	56개	17,779억원	-1.53%	1.24%	-0.03%	1.70%	20년 5개월
	⊙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동양투자신탁운용 컴플라이언스팀 (01.09-06.04) 동양투자신탁운용 채권운용팀 (06.04-08.05) KDB산은자산운용 채권운용팀 (08.05-12.07) 흥국자산운용 채권운용팀 (12.07-14.01)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채권운용1팀 팀장 (14.01-18.07)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채권투자운용본부 본부장 (18.07-21.01) 신한자산운용 채권투자운용본부 본부장(21.01-현재)								
정지원	1983	부책임운용역	53개	16,698억원	-1.53%	1.24%	-0.03%	1.70%	15년 8개월
	⊙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 아주대학교 건축학(경영학) 석사 - 동양생명보험 자산운용본부 융자팀 (10.12-13.02) - 동양생명보험 자산운용본부 특별계정팀 (13.03-19.07) -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채권운용3팀 (19.07-21.01) - 신한자산운용 채권운용3팀 (21.01-현재)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채권운용3팀, 채권투자운용본부장에서 담당하며,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상기운용역 부재시 등의 경우 채권운용3팀, 채권투자운용본부장내 다른 운용역의 운용도 가능합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4)'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주5) 위의 수치 산정 시 모자형구조의 투자신탁의 경우 모투자신탁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신한베스트크레딧단기증권모투자신탁[채권]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국내-채권형)				운용 경력 년수
			집합투자 기구 수	운용 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김재정	1973	책임운용역	56개	17,779억원	-1.53%	1.24%	-0.03%	1.70%	20년 5개월
	⊙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동양투자신탁운용 컴플라이언스팀 (01.09-06.04) 동양투자신탁운용 채권운용팀 (06.04-08.05) KDB산은자산운용 채권운용팀 (08.05-12.07) 흥국자산운용 채권운용팀 (12.07-14.01)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채권운용1팀 팀장 (14.01-18.07)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채권투자운용본부 본부장 (18.07-21.01) 신한자산운용 채권투자운용본부 본부장(21.01-현재)								
정지원	1983	부책임운용역	53개	16,698억원	-1.53%	1.24%	-0.03%	1.70%	15년 8개월
	⊙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 아주대학교 건축학(경영학) 석사 - 동양생명보험 자산운용본부 융자팀 (10.12-13.02) - 동양생명보험 자산운용본부 특별계정팀 (13.03-19.07) -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채권운용3팀 (19.07-21.01) - 신한자산운용 채권운용3팀 (21.01-현재)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채권운용3팀, 채권투자운용본부장에서 담당하며,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상기운용역 부재시 등의 경우 채권운용3팀, 채권투자운용본부장내 다른 운용역의 운용도 가능합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4)'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주5) 위의 수치 산정 시 모자형구조의 투자신탁의 경우 모투자신탁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신한달러단기자금증권모투자신탁(USD)[채권]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해외-채권형)				운용 경력 년수
			집합투자 기구 수	운용 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강판석	1984	책임운용역	9개	14,162억원	7.28%	7.16%	6.10%	5.67%	12년 11개월
	⊙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 한국투자신탁운용 해외채권팀 (13.09-16.06) -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해외채권팀 (16.06-17.06) - NH투자증권 FICC트레이딩부 (17.06-23.05) - 신한자산운용 해외채권운용팀 (23.06-26.03) - 신한자산운용 글로벌채권운용팀 (26.03-현재)								

김영강	1990	부책임운용역	10개	10,565억원	7.28%	7.16%	6.10%	5.67%	3년 9개월
	⦿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금융공학석사 졸업(2018.02~2020.02) - KIS채권평가 해외상품팀 (20.06-20.12) - IBK투자증권 채권전략부 (20.12-22.08) - 신한자산운용 해외채권운용팀 (22.09-26.03) - 신한자산운용 글로벌채권운용팀 (26.03-현재)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글로벌채권운용팀에서 담당하며,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상기운용역 부재시 등의 경우 글로벌채권운용팀내 다른 운용역의 운용도 가능합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4)'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주5) 위의 수치 산정 시 모자형구조의 투자신탁의 경우 모투자신탁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신한마음편한RIF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해외-재간접형)				운용 경력 년수
			집합투자 기구 수	운용 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김의찬	1984	책임운용역	39개	20,146억원	21.32%	16.71%	12.53%	11.18%	12년 6개월
	⦿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서울대학교 경제학 / University of Michigan 응용경제학 석사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부(09.11-12.07) 삼성화재 자산운용본부 일반계정운용파트(14.02-19.01) 신한 BNP파리바자산운용 솔루션운용팀(19.01-20.01)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글로벌투자운용본부(20.01-20.12)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글로벌멀티에셋팀(21.01-21.01) 신한자산운용 글로벌멀티에셋팀 (21.01-24.02) 신한자산운용 멀티에셋운용센터 (24.02-25.12) 신한자산운용 멀티에셋운용팀 팀장(26.01-현재)								
이예진	1997	부책임운용역	1개	80억원	7.95%	6.57%	12.53%	11.18%	3년 6개월
	⦿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경영학 신한자산운용 멀티에셋운용팀(2021.08~현재)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멀티에셋운용팀에서 담당하며,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상기운용역 부재시 등의 경우 멀티에셋운용팀내 다른 운용역의 운용도 가능합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4)'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주5) 위의 수치 산정 시 모자형구조의 투자신탁의 경우 모투자신탁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2026.07.31. 현재): 해당사항 없음

나.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 해당사항 없음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투자신탁, 증권형(혼합주식-재간접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추가납입가능), 종류형, 모자형

주) 집합투자기구의 수익구조 등 주요 사항은 "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투자집합투자기구
▼
신한단기국공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
신한베스트크레딧단기증권모투자신탁[채권]
신한달러단기자금증권모투자신탁(USD)[채권]
신한마음편한RIF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
신한마음편한RIF2040월배당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
신한마음편한RIF2040월배당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종류A1) (수수료선취-오프라인)
신한마음편한RIF2040월배당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종류A-e) (수수료선취-온라인)
신한마음편한RIF2040월배당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종류C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신한마음편한RIF2040월배당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종류C-e) (수수료미징구-온라인)
신한마음편한RIF2040월배당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종류C-i)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기관)
신한마음편한RIF2040월배당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종류C-p)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신한마음편한RIF2040월배당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종류C-pe)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신한마음편한RIF2040월배당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종류C-r)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신한마음편한RIF2040월배당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종류C-re)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신한마음편한RIF2040월배당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종류C-s)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유재산)
신한마음편한RIF2040월배당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종류C-w)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기관)
신한마음편한RIF2040월배당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종류C-O)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디폴트옵션))
신한마음편한RIF2040월배당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종류S)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신한마음편한RIF2040월배당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종류S-P)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
신한마음편한RIF2040월배당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종류S-R)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

나. 종류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

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이 투자신탁이 보유한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은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수수료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종류별 가입자격에 관한 사항

종류별	가입자격
수수료선취-오프라인(A1)	제한 없음
수수료선취-온라인(A-e)	판매회사 등이 제공하는 전자매체(On-line)를 통한 수익증권 취득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1)	제한 없음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판매회사 등이 제공하는 전자매체(On-line)를 통한 수익증권 취득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기관(C-i)	- 법에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 - 법 시행령 제10 조제2 항 각 호의 금융기관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 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 재정법에 따른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 운용하는 법인(외국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 이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을 100억 원 이상 매입하거나 매입한 개인 또는 법인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판매회사 등이 제공하는 전자매체(On-line)를 통한 수익증권 취득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r)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적립금 및 개인퇴직계좌 자금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re)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적립금 및 개인퇴직계좌 자금으로서 판매회사 등이 제공하는 전자매체(On-line)를 통한 수익증권 취득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유재산(C-s)	이 투자신탁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가입하는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업자의 계열금융회사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기관(C-w)	-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Wrap)계좌를 보유한 자 - 법 제8조제7항에 의한 신탁업자 -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가 판매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법인투자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디폴트옵션)(C-O)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적립금 및 개인퇴직계좌 자금으로서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를 통하여 가입한 자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 관련 클래스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가입한 투자자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 관련 클래스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가입한 투자자이며,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S-R)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개인퇴직자금으로서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 관련 클래스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가입한 투자자

(2) 종류별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	수수료선취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1)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1)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6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2년6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1)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후취	집합투자증권 환매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1) 집합투자기구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됩니다.
	수수료미징구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1)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1)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6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2년6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1)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 경로	온라인(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온라인슈퍼(s)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S 관련 클래스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다른 클래스(가입자격에 제한이 있는 클래스 제외)보다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기타	개인연금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고액,기관	기관투자자 또는 펀드가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고액거래자가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랩,기관	Wrap Account 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기관투자자 또는 펀드가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고유재산	이 투자신탁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업자의 계열금융회사 등이 매입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디폴트옵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중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 모자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법제233조에 의거한 모자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모투자신탁명		주요투자대상 및 전략
신한단기국공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	주요투자대상	국공채 60% 이상, 어음 등 40% 이하 투자
	투자목적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공채를 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국채, 통안채, 공사채, 지방채 등 국공채에 투자합니다. 잔여 투자신탁재산은 어음 및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하여 운용을 할 계획입니다.
신한달러단기자금증권	주요투자대상	채권

모투자신탁(USD)[채권]	주요투자대상	
신한달러단기자금증권모투자신탁(USD)[채권]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채권을 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미국 단기 국채 및 미국달러(USD)표시 채권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미국달러(USD) 표시 외의 채권 자산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자산을 편입하는 경우 이 투자신탁은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됩니다. - 이러한 환율변동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이 투자신탁은 미국달러(USD)외의 통화에 대해 거래비용과 유동성을 고려하여 파생상품을 이용한 환헤지를 (90% 수준 이상) 실행합니다.
신한마음편한RIF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주요투자대상	집합투자증권 등에 50% 이상 투자
	투자목적	이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재산의 대부분을 국내외 펀드, ETF 및 직접투자 방법 등을 통해 전통자산(주식, 채권 등) 및 대체자산(리츠/인프라/금/기타 등)에 투자하는 운용전략을 수행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해외 통화로 거래되는 해외집합투자증권 등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자산을 편입하는 경우 이 투자신탁은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됩니다. - 이 투자신탁은 이러한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는 투자대상자산 중 선진국 통화표시 채권에의 투자는 원화 환율변동 위험에 대해 거래비용과 유동성을 고려하여 파생상품을 이용한 환헤지를 실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담당운용역은 향후 거래비용과 유동성,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환헤지 전략의 효과적인 수행이 어렵거나 운용전략 측면에서 환헤지를 수행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환헤지를 수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선진국 주식 또는 신흥국 통화표시 자산에는 환율변동위험에 대한 헤지를 실행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러나 환율변동 및 금융시장 등의 상황에 따라 환헤지를 통한 환율변동위험 축소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담당 운용역은 환헤지를 일부 실행하여 환율변동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한베스트크레딧단기증권모투자신탁[채권]	주요투자대상	국내 채권에 투자
	투자목적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 채권을 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이 투자신탁은 60% 이상을 국내 채권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잔여 투자신탁재산은 양도성예금증서 등의 유동성 자산에 투자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 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자본시장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 방법으로 운용합니다.

자산 유형	투자비율 (%) (투자신탁재산 총액 대비)	주요 내용
1. 집합투자증권	**100% 이하**	신한단기국공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의 수익증권
1. 집합투자증권	**100% 이하**	신한베스트크레딧단기증권모투자신탁[채권]의 수익증권
1. 집합투자증권	**100% 이하**	신한달러단기자금증권모투자신탁(USD)[채권]의 수익증권
1. 집합투자증권	**95% 이하**	신한마음편한RIF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의 수익증권
1. 집합투자증권	**50% 초과**	상기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
2.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	**10% 이하**	법 시행령 제34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의 범위 내에서 1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3.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법 시행령 제2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한도 및 제한의 예외>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 제16조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모투자신탁 수익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집합투자규약 제16조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대상]

신한단기국공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

자산 유형	투자비율 (%) (투자신탁재산 총액 대비)	주요 내용
1. 채권	**60% 이상**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주식관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다만, 상기 신용평가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 자산을 3개월 이내 처분

		하는 등의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부도 등으로 해당 자산이 3개월 유예기간 이내에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2. 국공채	60% 이상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목의 채무증권(이하 "국공채"라 한다) 가. 국채증권 나.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라. 지방채 증권 마. 특수채 증권
3. 자산유동화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4. 어음 등	40% 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인 것에 한한다. 다만, 이 신용평가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 자산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의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부도 등으로 해당 자산이 3개월 유예기간 이내에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5. 금리스왑거래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무증권의 총액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무증권 총액의 100% 이하.
6. 집합투자증권 등	20% 이하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9조 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지분증권에 투자하지 않는 것에 한한다.)
7. 채권관련 장내파생상품		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관련 장내파생상품
8. 증권의 대여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 총액의 50% 이하
9. 환매조건부 매도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함. 증권총액의 50% 이하
10. 증권의 차입	20% 이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
11.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 등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래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투자대상자산에 운용하고 남은 현금을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업자가 자신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경우 - 법 시행령 제34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단기대출 -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12.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법 시행령 제2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13. 기타		위의 투자대상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 및 회생계획인가결정,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의결한 채권조정에 따라 채권 및 기업어음

		등의 채권 회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투자신탁재산으로 지분증권인 주식, 주식관련사채권 등을 취득할 수 있음.

파생상품(금리스왑거래 등 포함)에의 투자는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 이하로 한다.

<한도 및 제한의 예외>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 제16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집합투자규약 제16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집합투자규약 제16조 제6호 내지 제9호 및 제17조 제2호 내지 제6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주1) 증권의 대여: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한 기타 운용방법
- 수익률 증진 :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
-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
주2) 증권의 차입: 효율적 운용,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헤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증권 차입을 진행할 수 있음

신한달러단기자금증권모투자신탁(USD)[채권]

자산 유형	투자비율 (%) (투자신탁재산 총액 대비)	주요 내용
1. 채권	**60% 이상(채권 관련 집합투자증권 포함)**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주식관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다만, 상기 신용평가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 자산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의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부도 등으로 해당 자산이 3개월 유예기간 이내에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다만, 외국통화로 표시된 사채권의 경우 상기 신용평가등급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자산유동화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한국

		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
3. 어음 등	**40% 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1 이상인 것에 한한다. 다만, 이 신용평가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 자산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의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부도 등으로 해당 자산이 3개월 유예기간 이내에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다만, 외국통화로 표시된 어음의 경우 상기 신용평가등급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집합투자증권 등	**40% 이하**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9조 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지분증권에 투자하지 않는 것에 한한다.)
5. 금리스왑거래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무증권의 총액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무증권 총액의 100% 이하.
6. 채권관련 장내파생상품	**10% 이하(위험평가액 기준)**	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관련 장내파생상품
7. 통화관련 장내외파생상품	**10% 이하(위험평가액 기준)**	법 제5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화 관련 장내외파생상품(다만, 위험회피목적을 위한 거래에 한한다. 이하 “통화관련 장내외파생상품”이라 한다)
8. 환매조건부 매도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함. 증권총액의 50% 이하
9.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 등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래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투자대상자산에 운용하고 남은 현금을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업자가 자신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경우 - 법 시행령 제34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단기대출 -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
10.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법 시행령 제2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11. 기타		위의 투자대상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 및 회생계획인가결정,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의결한 채권조정(이와 유사한 외국 법제도에 의한 채권조정을 포함한다)에 따라 채권 및 기업어음 등의 채권 회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투자신탁재산으로 지분증권인 주식, 주식관련사채권 등을 취득할 수 있음.

파생상품(금리스왑거래 등 포함)에의 투자는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 이하로 한다.

<한도 및 제한의 예외>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 제16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집합투자규약 제16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집합투자규약 제16조 제5호 내지 제7호 및 제17조 제2호 내지 제6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신한마음편한RIF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자산 유형	투자비율 (%) (투자신탁재산 총액 대비)	주요 내용
1. 집합투자증권 등	**50% 이상**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9조 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
2. 주식	**40% 이하**	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중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과 법 제4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법 제9조 제15항 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등에 한한다).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
3. 채권	**40% 이하**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주식관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다만, 상기 신용평가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 자산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의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부도 등으로 해당 자산이 3개월 유예기간 이내에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다만, 외국통화로 표시된 사채권의 경우 상기 신용평가등급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자산유동화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
5. 어음 등	**40% 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3- 이상인 것에 한한다. 다만, 이 신용평가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 자산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의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부도 등으로 해당 자산이 3개월 유예기간 이내에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다만, 외국통화로 표시된 어음의 경우 상기 신용평가등급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6. 주식및채권관련 장내외파생상품	**10% 이하(위험평가액 기준)**	법 제5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 및 채권 관련 장내외파생상품
7. 통화관련 장내외파생상품	**10% 이하(위험평가액 기준)**	법 제5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화 관련 장내외파생상품(다만, 위험회피목적을 위한 거래에 한한다. 이하 "통화관련 장내외파생상품"이라 한다)
8. 증권의 대여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 총액의 50% 이하
9. 환매조건부 매도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함. 증권 총액의 50% 이하
10. 증권의 차입	**20% 이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
11.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 등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래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투자대상자산에 운용하고 남은 현금을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업자가 자신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경우 - 법 시행령 제34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단기대출 -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
12.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법 시행령 제2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파생상품(금리스왑거래 등 포함)에의 투자는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 이하로 한다. <한도 및 제한의 예외>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 제16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집합투자규약 제16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집합투자규약 제16조 제6호 내지 제9호 및 제17조 제2호 내지 제6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주1) 증권의 대여: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한 기타 운용방법
- 수익률 증진 :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
-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
주2) 증권의 차입: 효율적 운용,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헤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증권 차입을 진행할 수 있음

신한베스트크레딧단기증권모투자신탁[채권]

자산 유형	투자비율 (%) (투자신탁재산 총액 대비)	주요 내용
1. 채권	**60% 이상**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주식관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다만, 상기 신용평가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 자산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의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부도 등으로 해당 자산이 3개월 유예기간 이내에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자산유동화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3. 어음 등	**40% 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인 것에 한한다. 다만, 이 신용평가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 자산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의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부도 등으로 해당 자산이 3개월 유예기간 이내에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4. 금리스왑거래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무증권의 총액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무증권 총액의 100% 이하.
5. 집합투자증권 등	**40% 이하**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9조 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지분증권에 투자하지 않는 것에 한한다.)
6. 증권의 대여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 총액의 50% 이하
7. 환매조건부 매도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함. 증권 총액의 50% 이하
8. 증권의 차입	20% 이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
9.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 등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래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투자대상자산에 운용하고 남은 현금을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업자가 자신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경우 - 법 시행령 제34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단기대출 -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10.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법 시행령 제2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11. 기타		위의 투자대상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 및 회생계획인가결정,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의결한 채권조정에 따라 채권 및 기업어음 등의 채권 회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투자신탁재산으로 지분증권인 주식, 주식관련사채권 등을 취득할 수 있음.

파생상품(금리스왑거래 등 포함)에의 투자는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 이하로 한다.

<한도 및 제한의 예외>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 제16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집합투자규약 제16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집합투자규약 제16조 제6호 내지 제9호 및 제17조 제2호 내지 제6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주1) 증권의 대여: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한 기타 운용방법
- 수익률 증진 :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

-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
주2) 증권의 차입: 효율적 운용,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헤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증권 차입을 진행할 수 있음

나.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내용	적용 예외
이해관계인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가. 법 제83조제4항제1호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계열회사 증권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모투자신탁 투자제한]

신한단기국공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

구분	내용	적용 예외
이해관계인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가. 법 제83조제4항제1호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	
동일종목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 (집합투자증권 및 법 제279조 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 · 예금 ·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1.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2.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동일종목 투자	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중화인민공화국이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계열회사 증권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파생상품 투자	-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파생상품 투자	- 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집합투자증권	-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집합투자증권	-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제80조 제11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한도초과	<투자한도 초과 예외> -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집합투자규약 제16조 제6호 내지 제9호 및 제17조 제2호 내지 제6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	

한도초과	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신한달러단기자금증권모투자신탁(USD)[채권]

구분	내용	적용 예외
이해관계인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가. 법 제83조제4항제1호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	
동일종목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 (집합투자증권 및 법 제279조 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 · 예금 ·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1.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2.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중화인민공화국이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계열회사 증권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	

계열회사 증권	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파생상품 투자	-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파생상품 투자	- 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집합투자증권	-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집합투자증권	-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제80조 제11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한도초과	<투자한도 초과 예외> -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집합투자규약 제16조 제5호 내지 제7호 및 제17조 제2호 내지 제6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신한마음편한RIF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구분	내용	적용 예외
이해관계인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가. 법 제83조제4항제1호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	
동일종목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 (집합투자증권 및 법 제279조 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 · 예금 ·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1.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2.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중화인민공화국이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계열회사 증권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파생상품 투자	-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파생상품 투자	- 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집합투자증권	-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 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이 투자신탁 자산 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조항에도 불구하고 아래 예외 조항을 적용합니다. - 집합투자업자(외국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외국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법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것만 해당한다)의 집합투자재산을 외화자산으로 100분의 70 이상 운용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 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집합투자증권	-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제80조 제11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한도초과	<투자한도 초과 예외> -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집합투자규약 제16조 제6호 내지 제9호 및 제17조 제2호 내지 제6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신한베스트크레딧단기증권모투자신탁[채권]

구분	내용	적용 예외
이해관계인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가. 법 제83조제4항제1호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	
동일종목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 (집합투자증권 및 법 제279조 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 · 예금 ·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1.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2.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중화인민공화국이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계열회사 증권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파생상품 투자	-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파생상품 투자	- 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집합투자증권	-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집합투자증권	-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제80조 제11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한도초과	<투자한도 초과 예외> -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집합투자규약 제16조 제6호 내지 제9호 및 제17조 제2호 내지 제6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다.편입한 집합투자증권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주요 투자전략

- 이 투자신탁은 노후대비를 위한 안정성 있는 현금 흐름 설계를 목표로 하는 RIF(Retirement Income Fund)*펀드로서, 위험자산 모펀드(국내외 주식, 해외 채권, 리츠 등 다양한 자산에 분산투자하여 최적의 위험조정수익 추구)와 안정적 자산 모펀드(변동성 대비 기대수익률이 안정적인 국내외 단기채권 투자로 꾸준한 수익 추구)를 맞춤형으로 자산배분 설계를 하여 안정적 소득 흐름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목표 인출 종료시점(이 투자신탁의 경우 2040년) 이후에는 위험자산 모펀드의 비중을 축소하고, 안정적 자산 모펀드에의 비중을 확대하는 운용전략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 이 투자신탁은 매월 분배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운용되는 투자신탁으로 매월 분배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함을 목적으로 운용됩니다.
*RIF(Retirement Income Fund,은퇴소득펀드): 은퇴 이후 자산 인출기에 들어선 투자자를 위해, 은퇴 자산의 조기 소진을 방지하면서 안정성 있는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자산배분펀드입니다.

(2) 상세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상세투자전략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산배분 운용 프로세스]



1 전략적 자산배분에 대한 목표 설정
- 투자 목표 고려 → 투자 유니버스 정의 → 자산 간의 투자 비율 설정 (최적화)
- 밸류에이션, 시장상황 등을 고려한 전략적 자산배분 리뷰

2 자산별 투자 전망 및 신뢰 수준 결정
- 자산 별 선호도 및 신뢰 수준에 대한 투자 의견 정리
- 밸류에이션/시나리오/투자자포지션 등을 고려하여 작성

3 투자비중 결정 및 위험한도 점검
- Risk-Budgeting시스템을 활용하여 자산별 투자 비중 산출 및 위험 한도 점검

4 투자전략 회의를 통해 투자비중 결정
- 산출된 자산군별 투자 비중에 대해 의사 결정 실시
- 투자전략 회의(본부장, 투자전략센터, 운용팀)

5 변동성 지표 (+자산배분회의)를 활용하여 포트폴리오 Beta 조절
- 다양한 변동성 관련 지표를 사용하여 현 시점에 대한 리스크 선호/회피 수준 판단

6 유니버스 구성 및 위험한도 점검을 통한 모델 포트폴리오 선정
- 펀드 성과 및 정성적 요인에 대한 Scoring과 내부회의를 통한 펀드선정
- 시뮬레이션을 통한 제약조건, 위험한도 위반여부 사전점검

7 포트폴리오 모니터링, 리밸런싱 및 전반적인 위험관리
- 시장 상황 변화에 따른 투자비중, 성과, 위험한도 등에 대한 사후점검
- Cost-Benefit ratio를 감안한 리밸런싱

[모투자신탁 투자대상 예시]



투자대상	
신한마음편한RIF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주식	미국주식 (S&P500, NASDAQ100, Value, Growth, AI, 반도체 등) 유럽주식 (Eurostoxx50, 럭셔리, 산업재, 방산 등) 일본주식 (Nikkei225, 로봇, 반도체 등) 신흥국 주식 (대형코어, 인터넷, 소비재, 금융 등) 한국주식 (대형코어, 방산, 조선 등) 아시아주식 (코어, AI인프라 등)
채권	신흥국 채권 미국 단기 하이일드
대체자산	리츠 인프라 금/금광주



투자대상		
신한단기국공채 증권모투자신탁[채권]	신한베스트크레딧단기 증권모투자신탁[채권]	신한달러단기자금 증권모증권투자신탁(USD)[채권]
국공채 중심 투자와 우량채권, 예금담보 CP와 같은 안전자산 투자	기업의 펀더멘털을 면밀히 분석, 가치에 비해 저평가된 신용 채권(A- 이상) 투자하는 단기채권펀드	단기 미국채(T-bill), 달러표시 한국 채권(단기 KP물) 중심 운용으로 변동성 대비 높은 수익 추구
듀레이션 1년~1.5년	듀레이션 1년 내외	듀레이션 0.5년 내외

※ 상기 모투자신탁은 변경될 수 있으며, 모투자신탁의 운용적략 또한 현재 기준이며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전략]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전략
신한단기국공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	- 주요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국채, 통안채, 공사채, 지방채 등 국공채에 투자합니다. 잔여 투자신탁재산은 어음 및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하여 운용을 할 계획입니다.
신한베스트크레딧단기증권모투자신탁[채권]	- 주요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60% 이상을 국내 채권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잔여 투자신탁재산은 양도성예금증서 등의 유동성 자산에 투자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
신한달러단기자금증권모투자신탁(USD)[채권]	- 주요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미국 단기 국채 및 미국달러(USD)표시 채권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 환헤지전략 이 투자신탁은 미국달러(USD) 표시 외의 채권 자산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자산을 편입하는 경우 이 투자신탁은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됩니다. 이러한 환율변동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이 투자신탁은 미국달러(USD)외의 통화에 대해 거래비용과 유동성을 고려하여 파생상품을 이용한 환헤지를 (90% 수준 이상) 실행합니다.

신한마음편한RIF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 주요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재산의 대부분을 국내외 펀드, ETF 및 직접투자방법 등을 통해 전통자산(주식, 채권 등) 및 대체자산(리츠/인프라/금/기타 등)에 투자하는 운용전략을 수행합니다. - 환헤지전략 이 투자신탁은 해외 통화로 거래되는 해외집합투자증권 등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자산을 편입하는 경우 이 투자신탁은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됩니다. 이 투자신탁은 이러한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는 투자대상자산 중 선진국 통화표시 채권에의 투자는 원화 환율변동 위험에 대해 거래비용과 유동성을 고려하여 파생상품을 이용한 환헤지를 실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담당운용역은 향후 거래비용과 유동성,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환헤지 전략의 효과적인 수행이 어렵거나 운용전략 측면에서 환헤지를 수행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환헤지를 수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선진국 주식 또는 신흥국 통화표시 자산에는 환율변동위험에 대한 헤지를 실행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러나 환율변동 및 금융시장 등의 상황에 따라 환헤지를 통한 환율변동위험 축소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담당 운용역은 환헤지를 일부 실행하여 환율변동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위험관리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대상 자산의 시장위험(Market Risk), 신용위험(Credit Risk), 유동성 위험(Liquidity Risk)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위험관리방법을 실행합니다.

- 사전적으로 검증된 투자 Universe(종목후보군) 종목 투자여부 점검
- 펀드별 추적오차(Tracking Error)점검
- 종목별 보유한도준수여부 점검
- 펀드별 유동성 점검 등

(4) 유동성 위험 및 그에 대한 비상조치계획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선정 시에 투자매력도 뿐만 아니라 순자산 규모와 유동성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대체적으로 환금성이 높은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상황 급변 등의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유동성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자산을 비유동성 자산으로 지정하여 관리함으로써 펀드 전체의 유동성 위험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단, 시장상황 급변 등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한 유동성 위험 발생시 제반 법규 및 규약을 준수하고, 투자자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자산 건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처분하며 투자자에게 적시에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 원칙으로 합니다.

(5) 환위험관리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해외 통화로 거래되는 해외집합투자증권 등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자산을 편입하는 경우 이 투자신탁은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됩니다.

그러나 일부 모투자신탁에서는 거래비용과 유동성을 고려하여 외화표시자산 일부에 대해 환헤지 전략을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이 투자신탁에서는 일부 환율변동위험을 줄일 수 있으나, 완전히 상쇄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주가변동, 환율변동 및 외환시장 등의 상황에 따라 실제 헤지비율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신한달러단기자금증권모투자신탁(USD)[채권]

이 투자신탁은 미국달러(USD) 표시 외의 채권 자산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자산을 편입하는 경우 이 투자신탁은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됩니다.

이러한 환율변동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이 투자신탁은 미국달러(USD)외의 통화에 대해 거래비용과 유동성을 고려하여 파생상품을 이용한 환헤지를(90% 수준 이상) 실행합니다.

▶ 신한마음편한RIF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이 투자신탁은 해외 통화로 거래되는 해외집합투자증권 등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자산을 편입하는 경우 이 투자신탁은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됩니다.

이 투자신탁은 이러한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는 투자대상자산 중 선진국 통화표시 채권에의 투자는 원화 환율변동 위험에 대해 거래비용과 유동성을 고려하여 파생상품을 이용한 환헤지를 실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담당운용역은 향후 거래비용과 유동성,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환헤지 전략의 효과적인 수행이 어렵거나 운용전략 측면에서 환헤지를 수행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환헤지를 수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선진국 주식 또는 신흥국 통화표시 자산에는 환율변동위험에 대한 헤지를 실행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러나 환율변동 및 금융시장 등의 상황에 따라 환헤지를 통한 환율변동위험 축소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담당 운용역은 환헤지를 일부 실행하여 환율변동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헤지의 장단점	환헤지란 선물환 계약 등을 이용하여 펀드의 매수시점과 매도시점의 환율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없애는 것을 뜻합니다. 즉, 해외펀드는 대부분 외화로 해외자산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하락(외화대비 원화가치 상승)하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추가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헤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투자대상 국가의 경제성장 등으로 인하여 해당 통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경우(원화대비 해당 외화가치 상승)에는 투자자들이 환차익을 얻을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오히려 추가적 이익기회가 상실되기도 합니다. 또한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거래 수수료 등의 추가적 비용이 소요됩니다.
환헤지의 비용	이 투자신탁은 파생상품을 이용한 환헤지전략을 수행하는데 있어 시장상황에 따라 장외파생상품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조합하거나 어느 한쪽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장내파생상품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증거금 및 수수료 등 비용이 정형화 되어 있어 환헤지 비용 산출이 가능하나, 장외파생상품은 계약환율자체에 이미 비용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비용을 별도 분리하여 산출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장내파생상품의 환헤지 비용만을 표시할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게 될 수 있으므로 환헤지에 따른 비용을 별도로 기재 하지 않습니다.
환헤지가 펀드 수익률에 미치는 효과	환율이 하락(외화대비 원화가치 상승)할 경우 외화자산 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지만, 동시에 환헤지 계약에서 환차익이 발생하여 손익이 상쇄되며, 환율이 상승(원화대비 해당 외화가치 상승)하는 경우 외화자산의 가치 상승으로 이익이 발생하지만, 동시에 환헤지 계약에서 환손실이 발생하여 손익이 상쇄됩니다. 따라서 환헤지를 통해 환율 변동이 펀드 수익율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산가치의 변동, 환헤지 시행 시기의 시차, 헤지비용 등의 이유로 환율 변동으로 인한 각각의 환차손과 환차익이 완벽하게 상쇄되기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집합투자업자가 환헤지를 수행한다고 하여 해당 펀드 수익률이 환율변동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며, 자산가치 변동과 환율변동이 해당 펀드의 수익률에 반드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거래 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어 펀드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6) 비교지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다양한 국내외 집합투자증권에 분산투자되며, 자산별 비중이 조정되므로 특정한 비교지수를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나.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국내외 주식 및 채권 관련 집합투자증권 등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투자대상 자산의 가치 상승 등에 따른 수익을 추구합니다.
또한, 투자대상 전체(또는 일부)는 외국통화로 거래되기에 원화대비 해당 외국통화의 환율변동이 이 투자신탁의 성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이 아래 세 경우 중 1) 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규약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수익자총회 없이 신탁계약 변경을 통하여 "신한마음편한적격TDF2040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의 자투자신탁으로 전환할 예정이며, 2) 또는 3)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향후 처리 계획(해지, 합병, 모자형 전환, 존속 등) 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합니다.
1)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6 개월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5 억원 미만인 경우
2)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 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3)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 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아래는 투자신탁의 투자위험에 대한 기술이며, 자투자신탁의 경우 해당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기준으로 작성됩니다.

가. 일반위험

구분	주요 내용
원본 손실 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증권 등 가격변동위험	투자대상 증권의 발행회사 영업환경, 재무상황, 신용상태 악화 및 시장에서의 증권 수급상황 등의 이유로 인해 투자대상 증권의 가격하락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재산의 가치 하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이 투자신탁이 해외 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해외 시장의 지정학적 위험 및 증권의 가치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관련 증권시장의 법령 및 제도의 급격한 변화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	해외투자 자산은 필연적으로 국내통화와 투자대상국 통화와의 환율변동에 따르는 위험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환율변동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손실위험을 축소하고자 이 투자신탁은 외화표시자산 대비 한국 원화 변동에 대한 부분 환헤지를 시행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에 편입된 타 해외 집합투자증권에서 투자하는 자산의 통화와 해외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표시통화가 상이한 경우, 비록 기준가격 표시통화에 대해 한국 원화 대비 부분환헤지가 실행되더라도 동 해외 집합투자증권이 투자하고 있는 자산의 일부 통화와 기준가격 표시통화간의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제약요인들에 의해 부분환헤지의 효과가 상쇄되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1.헤지하는 금액: 이 금액은 투자대상 주식의 주가의 변동성, 자산배분의 변화, 투자신탁의 추가 설정이나 부분 환매 또는 외국통화로 지급되는 각종 비용 등으로 인해 매일 변할 수 있습니다. 2.헤지할 통화의 유동성 및 헤지 비용 3.외환시장의 붕괴 또는 일상적인 통제수준을 넘는 외환시장의 충격사건으로 인해 정상적인 거래나 정상적인 가격형성이 곤란한 경우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	4.관련 법령 제한 또는 규제 변화 등 5.선물환거래 상대방의 부도 환 헤지는 펀드에 각종 비용이 발생하며 환율의 변동방향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을 수반합니다. 환 헤지 수단이 없는 경우 환율의 불리한 변동은 펀드에 상당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마진콜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산을 매각해야 할 수도 있고 거래상대방위험(장외거래의 경우)에 노출됩니다. 이 투자신탁은 제반 약정에 의거하여 환 헤지 관련 거래상대방의 정산요구에 응하여야 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1)보유 유동자금, 2) 보유 자산의 매각의 방법으로 정산금을 마련하여 지급할 예정으로 환 헤지 관련 손실은 전적으로 이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한편, 이 투자신탁이 자금의 mismatch, 보유자산의 낮은 유동성 등의 사유로 정산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 채무불이행 상태가 되고 이와 관련된 손실은 전적으로 이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과세위험	과세당국에서 인식하는 투자에 따른 손익은 세금을 내야 하는 과세대상 자산에서 발생한 손익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 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익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과세손익은 수익이 있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손해를 보더라도 이를 손실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비과세 대상자산에서 손실을 본 경우라도 과세대상 자산에서는 발생한 수익이 있다면 결과적으로 전체투자결과가 손실이 발생한 경우라도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 자산의 예 :해외투자 시 이익 및 환차손익, 채권투자 시 이자 수익 등 *비과세 대상 자산의 예:국내상장주식 매매차익 등
재간접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타 집합투자증권의 순자산가치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노출됩니다. 또한 주로 타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기 때문에 타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기간 내 불가피하게 중도 환매를 할 경우 환매수수료 부담이 발생하여 당해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를 하락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투자신탁보다 일반적으로 환매기간이 더 소요됩니다. 집합투자증권은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정기간의 시차를 두고 평가에 반영이 됩니다. 그 결과 당해 투자신탁에 대하여 매입 청구 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일정기간 이전 가격으로 평가된 가격입니다. 주요 투자대상인 타 집합투자증권은 개별적인 운용전략하에 운용되며 개별적인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해 운용사의 정책 및 전략에 따라 그 세부내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타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직접 자산을 투자하는 투자신탁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기회비용과 손실을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
개방형 펀드 구조 관련 위험	이 투자신탁은 개방형 펀드로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투자자의 환매 시점의 시장 상황에 따라 자산의 매도 가격이 결정되며, 이로 인한 손익은 환매분 외 기타 수익자에게 동일하게 귀속됩니다.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이 투자신탁은 해당 증권시장 전체의 가격하락, 이자율 변동 등 거시경제 지표의 변화 또는 정치,경제상황, 정부의 정책 변화 등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 위험에 노출됩니다. 경제성장률, 환율, 금리변동 등의 요인들은 주식시장 전체에 영향을 끼쳐 개별 주식가격의 등락을 초래하며 이는 투자신탁 재산의 가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 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편입 자산의 가격 변동에 의해 원금 손실을 입게 될 수 있습니다.
이자율 변동에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 상승에

따른 위험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의 잔존만기가 길어질 경우 해당 위험도 커질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파생상품은 적은 원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효과(레버리지)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분	주요 내용
거래상대방 및 신용위험	관련 거래상대방 또는 보유하는 국내외 증권 및 단기 금융상품을 발행한 회사가 신용등급의 하락 또는 부도 등과 같은 신용사건에 노출되는 경우 그 증권, 단기금융상품 등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으며, 이는 이 투자신탁 재산의 가치 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국가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해외 자산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 대상 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더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자산 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 및 환율 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전반적인 투명성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 일부 시장의 증권은 외국인의 투자 한도, 넓은 매매호가 차이, 거래소의 제한된 개장시간과 거래량 부족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유동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고, 가격변동의 위험이 더 클 수 있으며 환매가 정지될 수 있는 위험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외국세법에 의한 과세에 따른 위험	해외 증권에 투자할 경우 해당 증권이 특정 국가에 상장되어 거래됨에 따라 특정 외국 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특정 외국의 세법 변경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세후배당소득, 세후양도소득 등이 예상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ETF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인 ETF(Exchange Traded Funds)는 상장폐지위험, 추적대상지수에 대한 추적오차발생위험, 거래규모 및 기초자산의 유형에 따른 유동성위험, 종가와 NAV(순자산)의 괴리위험, 설정/환매시 세금부담위험, 추적대상지수의 산출방식 변경 및 중단위험 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펀드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자산배분 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국내 · 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자산별 편입비율을 조절하는 자산배분전략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자산배분전략으로 인해 특정 자산의 손실이 확대되어, 펀드 전체의 손실이 예측한 규모 이상으로 커지거나 수익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어 일반 투자신탁에 비해 더 큰 변동성 및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외파생상품 거래 위험	장외파생 거래는 거래소에서 거래가 이뤄지지 않으며, 표준화 되어 있지 않고 거래 상대방간의 협상으로 이뤄집니다. 이러한 거래는 일일 가격변동 제한 및 투기 포지션 제한 등의 규제를 적게 받습니다. 시장의 유동성 부족 및 하락은 투자 자산 가치 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 상대방이 파산하는 경우 계약과 관련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수 있으며, 또한 이를 보전하기 위해 사전에 제공받은 담보를 처분하는데 시일이 걸릴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사모채권 투자위험	본 투자신탁은 사모발행채권에 투자합니다. 사모형식으로 발행되는 채권은 공모형식으로 발행되는 채권보다 발행요건이 간단하며 발행후 유동성이 매우 낮아 거래가 거의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채권에 대한 투자는 만기보유를 가정하며 투자이후 신용위험, 이자율위험 등 위험요인이 예상되더라도 매각등을 통한 선제적인 위험관리는 이루어지지 못할

사모채권 투자위험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장된 부동산/인프라 집합투자기구 등의 가격변동위험	부동산 등에 간접적으로 투자하게 되는 리츠(REITs) 또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인프라에 간접적으로 투자하게 되는 인프라 관련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는 거래소에 상장되어 주식과 같이 거래되므로 주식과 같은 가격변동 위험이 있습니다. 리츠의 가격은 부동산 경기 외에도 결제 상황, 수급, 이자율변동 등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해당 지역의 부동산 경기가 좋은 상황에도 다른 요인으로 인하여 상장된 리츠의 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상장된 부동산/인프라 집합투자기구 등의 유동성위험	부동산에 간접적으로 투자하게 되는 리츠(REITs) 또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인프라에 간접적으로 투자하게 되는 인프라 관련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는 소형주 주식에 투자하는 것과 유사한 유동성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주식시장 내의 유동성이 풍부한 대형주 주식 등에 비해 더 큰 변동성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머징 마켓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 및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일부 집합투자증권은 이머징 마켓에 투자할 수 있으므로 국가위험 측면에서 매우 높은 수준의 위험에 노출됩니다. 이머징 마켓에서 발행된 증권은 선진국에서 발행된 유사한 증권에 비해 일반적으로 예상수익률이 높으나,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낮으며, 과거 변동성이 높았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이머징 국가의 경우 정치/경제/사회적 불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불안정성은 투자수익률에 직/간접적으로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이일드 채권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 및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일부 집합투자증권은 하이일드 채권에 투자합니다. 하이일드 채권 및 유사한 신용등급을 가진 비우량 채권 등은 투자적격등급 미만의 채권들로, 투자적격등급의 채권들보다 높은 금리, 신용 및 유동성 위험 등이 수반됩니다. 하이일드채권 등은 재무상황악화, 신용상태의 악화,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원리금 지급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못할 위험이 크며, 이로 인하여 투자원본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행물량이 적고 시장이 협소하여 시장에서 매각 시 수요가 전혀 없거나 부족하여 매각할 수 없거나 매각이 가능하더라도 적정가격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월 분배금 지급에 따른 위험	이 투자신탁은 매월 분배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함을 목적으로 운용됩니다. 다양한 경제변수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투자신탁의 특성상 분배금은 확정된 수익이 아니며 변동될 수 있고, 분배금 지급방식 및 가입시기에 따라 투자원금액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규모는 지속적인 월분배로 인해 소규모화 될 수 있고, 이로 인해 효율적인 운용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분배금 지급일 도래 전 대량설정 혹은 대량환매 등으로 인하여 이 투자신탁의 순자산총액이 급변동할 경우 분배금 지급일에 실제 지급되는 분배금이 예상보다 적거나 많을 수 있으며, 배당재원이 부족할 경우 배당금이 줄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분배금 지급으로 인한 과세이익에 대해 매월 단위로 원천징수 되므로 1년에 한번 분배금을 지급하는 일반 펀드와 비교하여 과세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FX 스왑전략에 따른 위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FX 스왑을 활용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FX스왑은 두 나라의 이자율 수준, 그 차이, 기타 거시적인 제반 여건에 따라 프리미엄 또는 디스카운트가 영향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FX 스왑 프리미엄이 커질 경우 손실가능성을 포함하여 펀드 수익성에 불리한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분배금 지급에 따른 투자원본 고갈 위험	이 투자신탁은 펀드 운용성과를 바탕으로 매월 분배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운용됩니다. 다만 해당 기간의 투자수익이 목표 분배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투자원금을 처분하여 분배금 지급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장의 하락 국면에서 평가손실이 지속되는 가운데 분배금 지급을 위해 보유자산을 매각하여 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 과정에서 평가손실을 확정하며 원본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시장상황이 지속될 경우 투자자는 원본을 영구적으로 고갈 시킬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분배정책 변경 위험	이 투자신탁의 월 분배금 지급 주기, 지급 기준금액 및 산정방식은 집합투자업자가 정한 분배정책을 따르며, 해당 정책은 시장상황, 투자신탁의 규모 및 운용성과 등을 고려하여 변경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에 지급되던 분배금의 주기 또는 금액이 조정되거나, 분배금 지급 자체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구분	주요 내용
유동성 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할 경우 투자대상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의 결여가 투자신탁재산 가치의 하락을 초래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평가된 주식들의 경우 유동성이 낮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투자신탁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유동성도 낮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매에 응하기 위해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이러한 낮은 유동성은 단기간내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주식을 매도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으며 따라서 투자신탁 기준가격의 하락을 가져올 수 도 있습니다.
환매 중 재산가치 변동 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고 일정기간의 환매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기준가격 적용일까지 기간 동안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위험	이 투자신탁은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유로 인해 환매가 연기 혹은 일정기간 제한 될 수 있습니다. 1. 집합투자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뚜렷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나. 증권시장이나 해외증권시장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다.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나.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다.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투자자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3.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투자회사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등.
집합투자기구 해지의 위험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 미만이거나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오퍼레이션 위험	해외투자의 경우 국내투자와 달리 시차에 의한 개장 및 폐장시각의 차이로 인해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에 있어 시차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복잡한 결제과정 및 현금운용과정에서 업무처리 위험이 국내투자보다 더 높습니다.

대량환매위험	이 투자신탁에 집중된 대량환매가 발생할 경우에는 환매자금을 우선적으로 조달해야 합니다. 이로 인하여 운용전략을 유지하거나 효과적으로 운용전략을 구사 하는데 있어 일부 제약을 받을 수 있고, 이는 환매된 집합투자증권 및 잔존 집합투자증권의 가치에 손실을 초래하여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펀드규모위험	투자신탁의 설정초기 또는 환매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 규모가 일정규모 이하로 적어지는 경우에는 투자대상 자산의 편입 및 분산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 지지 않고 일부 자산에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은 이 투자신탁의 성과 및 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증권 대차거래 위험	증권대차 거래가 일어나는 펀드의 경우 예탁결제원 등 시장참여자들의 관리로 발생할 가능성은 낮으나 해당 대차증권의 미상환, 관련 담보의 부족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이 설정된 이후 3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투자신탁의 원본손실가능성을 기준으로 펀드의 위험등급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원본손실가능성의 판단기준으로는 가격하락위험,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집중위험 등이 있습니다. 해당 펀드를 각 위험 별로 평가한 후 총괄하여 원본손실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1등급, 높은 경우 2등급, 다소 높은 경우 3등급, 보통인 경우 4등급, 낮은 경우 5등급, 매우 낮은 경우 6등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6개의 위험등급 중 2등급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이 설정된 이후 3년 경과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 또는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을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구분하게 되며 등급분류기준이 실제 수익률 변동성 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위험등급이 높아지거나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단, 실제 과거 수익률 변동성에 따른 위험등급의 변동은 상품에 내재되어있는 거래상대방위험,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등 위험요인을 모두 반영하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신한자산운용㈜ 자체 투자위험등급 기준 예시 >

위험등급	대상 펀드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 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 - 최대손실률이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 수준을 가지는 집합투자기구
2등급 [높은 위험]	- 고위험자산에 8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 수준을 가지는 집합투자기구
3등급 [다소 높은 위험]	- 고위험자산에 최대 80%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최대손실률이 20%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 수준을 가지는 집합투자기구
4등급 [보통 위험]	- 고위험자산에 50% 미만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 - 중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 수준을 가지는 집합투자기구
5등급 [낮은 위험]	- 저위험자산에 최소 60%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파생결합사채 포함)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 수준을 가지는 집합투자기구
6등급 [매우 낮은 위험]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 단기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 수준을 가지는 집합투자기구

1) 고위험자산: 주식, 원자재, REITs, 투기등급채권(BB+등급 이하), 파생상품 및 이와 관련된 기초자산으로 이루어진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2) 중위험자산: 채권(BBB-등급 이상), CP(A3등급 이상) 및 이와 관련된 기초자산으로 이루어진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3) 저위험자산: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A-등급 이상), CP(A2-등급 이상), 현금성 자산 및 이와 관련된 기초자산으로 이루어진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4) 외환위험에 노출되는 해외투자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국내자산의 분류기준을 준용하되 환헤지여부 및 투자국가의 신용등급 등에 따라 위험등급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5) 다른 집합투자기구 자산의 40% 이상을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주로 편입하고자 하는 투자대상 집합투자기구의 속성을 기초로 집합투자업자가 위험등급을 판단합니다.
6) 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각 자집합투자기구의 각 모집합투자기구별 편입비율을 고려하여 자집합투자기구의 위험등급을 판단합니다.
7) 상기 명시된 위험등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대상, 시장 및 신용위험 등 손실가능성을 고려하여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11. 매입, 환매 및 전환 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종류별 가입자격

이 투자신탁의 가입 가능한 수익증권의 종류 및 가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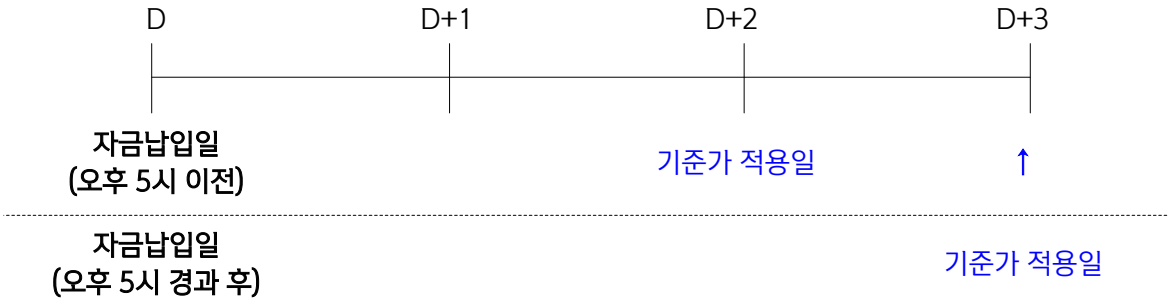
종류별	가입자격
수수료선취-오프라인(A1)	제한 없음
수수료선취-온라인(A-e)	판매회사 등이 제공하는 전자매체(On-line)를 통한 수익증권 취득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1)	제한 없음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판매회사 등이 제공하는 전자매체(On-line)를 통한 수익증권 취득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기관(C-i)	- 법에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 - 법 시행령 제10 조제2 항 각 호의 금융기관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 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 재정법에 따른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 운용하는 법인(외국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 이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을 100억 원 이상 매입하거나 매입한 개인 또는 법인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판매회사 등이 제공하는 전자매체(On-line)를 통한 수익증권 취득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r)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적립금 및 개인퇴직계좌 자금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re)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적립금 및 개인퇴직계좌 자금으로서 판매회사 등이 제공하는 전자매체(On-line)를 통한 수익증권 취득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유재산(C-s)	이 투자신탁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가입하는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업자의 계열금융회사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기관(C-w)	-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Wrap)계좌를 보유한 자 - 법 제8조제7항에 의한 신탁업자 -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가 판매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법인투자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디폴트옵션)(C-O)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적립금 및 개인퇴직계좌 자금으로서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를 통하여 가입한 자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 관련 클래스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가입한 투자자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 관련 클래스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가입한 투자자이며,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S-R)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개인퇴직자금으로서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 관련 클래스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가입한 투자자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A. 17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 (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B. 17시 경과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4영업일 (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각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다만, 수익자의 개별적인 매입 또는 환매청구 없이 사전 약정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집합투자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업무가 처리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각 이전에 매입 또는 환매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C.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매수 청구 : 집합투자업자는 자투자신탁의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할 사유가 없는 한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나. 환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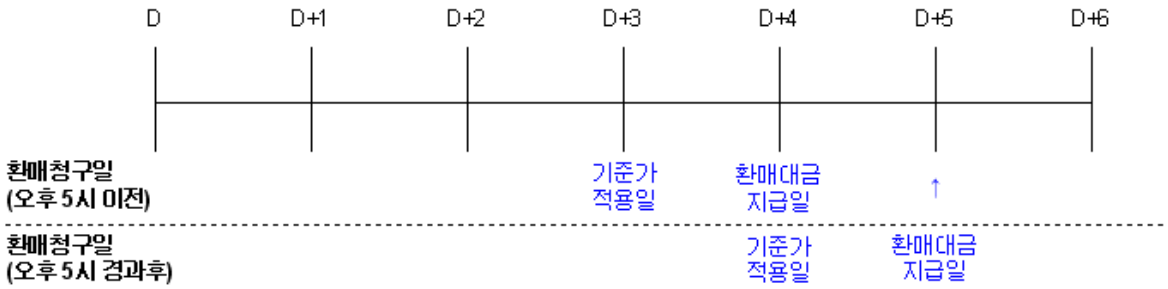
(1) 수익증권의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의 영업점을 통해 직접 환매하거나, 판매회사가 온라인 판매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을 통해 환매할 수 있습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A. 17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5영업일(D+4)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B. 17시 경과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5영업일(D+4)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6영업일(D+5)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각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다만, 수익자의 개별적인 매입 또는 환매청구 없이 사전 약정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집합투자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업무가 처리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각 이전에 매입 또는 환매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C. 판매회사가 해산·인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 청구: 집합투자업자는 모투자신탁에 환매를 청구하지 않더라도 이 투자신탁의 자금으로 환매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아닌 한 수익증권의 환매청구를 받은 날에 모투자신탁에 환매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3)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4)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등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17시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7시경과후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 또는 환매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5)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증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 판매회사는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수익증권을 교부합니다.

(6)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제3영업일 전일(17시 경과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제4영업일 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7)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법령과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7조의 절차에 따라 지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환매연기사유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소된 경우, 법 제237조와 시행령 제258조의 절차에 따라 환매할 수 있습니다.

※ 환매연기사유

① 집합투자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뚜렷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나. 증권시장이나 해외증권시장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할 수 없

는 경우
다.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나.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다.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투자자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③ 환매를 청구 받거나 요구받은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투자회사 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④ 그밖에 ①부터③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8)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시행령 제259조의 절차에 따라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상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다. 중도환매 가능여부 및 환매수수료 부과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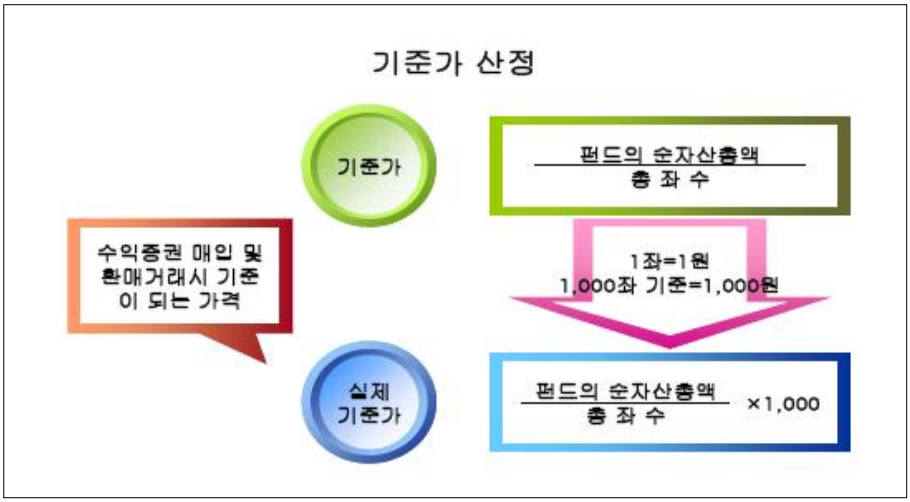
중도환매 불가	중도환매 허용 (중도환매시 비용 발생)	중도환매 허용 (중도환매시 비용 발생하지 않음)
-	-	○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분	내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1,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종류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종류(Class)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다만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기간 중에도 이자수익 등으로 투자신탁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공시장소	판매회사 영업점·집합투자업자(www.shinhanfund.com)·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인터넷홈페이지

주1)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 가치가 크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1)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원칙 :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합니다.

구분	평가원칙
시가	증권시장(해외 증권시장을 포함함)에서 거래된 최종시가(해외 증권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 또는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해외 파생상품시장을 포함함)에서 공표하는 가격(해외 파생상품의 경우 전날의 가격).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1.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간 계속하여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2. 해외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공정가액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액(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법 제79조 제2항에 따른 충실의무를 준수하고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평가한 가격을 말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으로서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합니다. 1. 투자대상자산의 취득가격 2. 투자대상자산의 거래가격 3. 투자대상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자가 제공한 가격 가. 채권평가회사 나.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다. 신용평가업자 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마. 인수업을 영위하는 투자매매업자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자에 준하는 자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등록 등을 받은 자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자에 준하는 외국인 4. 환율 5.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2)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 시가(공정가액) 평가의 경우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구분		평가방법
1	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해외 상장 주식의 경우 전날의 가격)

2	비상장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외화표시자산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외국 채권평가회사 또는 회계법인이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3	장내파생상품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 등이 공표하는 가격 (해외 장내파생상품의 경우 전날의 가격)
4	장외파생상품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 단, 채권평가회사가 가격제공이 곤란한 경우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가격
5	상장채권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외화표시자산인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외국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간 계속하여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정
6	비상장채권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상장채권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장채권을 포함)
7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8	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모집합투자증권은 평가기준일에 산출된 기준가격) 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 다만,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해외 상장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전날의 가격)
9	외화표시자산의 평가시 한국원화로 환산하는 환율	평가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중개회사에서 고시하는 최근 거래일의 매매기준율 또는 최종시가로 한다.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2)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 받고 설명 받으셔야 합니다.

가. 종류별 가입자격에 관한 사항

종류별	가입자격
수수료선취-오프라인(A1)	제한 없음
수수료선취-온라인(A-e)	판매회사 등이 제공하는 전자매체(On-line)를 통한 수익증권 취득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1)	제한 없음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판매회사 등이 제공하는 전자매체(On-line)를 통한 수익증권 취득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기관(C-i)	- 법에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 - 법 시행령 제10 조제2 항 각 호의 금융기관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 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 재정법에 따른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 운용하는 법인(외국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 이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을 100억 원 이상 매입하거나 매입한 개인 또는 법인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판매회사 등이 제공하는 전자매체(On-line)를 통한 수익증권 취득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r)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적립금 및 개인퇴직계좌 자금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re)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적립금 및 개인퇴직계좌 자금으로서 판매회사 등이 제공하는 전자매체(On-line)를 통한 수익증권 취득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유재산(C-s)	이 투자신탁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가입하는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업자의 계열금융회사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기관(C-w)	-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Wrap)계좌를 보유한 자 - 법 제8조제7항에 의한 신탁업자 -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가 판매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법인투자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디폴트옵션)(C-O)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적립금 및 개인퇴직계좌 자금으로서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를 통하여 가입한 자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 관련 클래스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가입한 투자자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 관련 클래스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가입한 투자자이며,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S-R)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개인퇴직자금으로서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 관련 클래스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가입한 투자자

나.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분	지급비율 (또는 지급금액)		
	선취판매수수료	**후취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지급시기	**매입시**	**환매시**	**환매시**
수수료선취-오프라인(A1)	**납입금액의 1.000% 이내**	-	**없음**
수수료선취-온라인(A-e)	**납입금액의 0.500% 이내**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1)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기관(C-i)	-	-	없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r)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re)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유재산(C-s)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기관(C-w)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디폴트옵션)(C-O)	-	-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	3년 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0.150%이내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S-R)	-	-	

*** 판매수수료는 위에 기재한 범위 이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적용할 수 있습니다. 판매회사별 판매수수료율은 판매회사 또는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분	지급비율 (연간%)									
	집합투자업자 보수	판매회사 보수	신탁업자 보수	일반사무 보수	총 보수	(동종유형총보수)	기타 비용	총보수 비용	합성총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증권거래 비용
수수료선취-오프라인(A1)	0.350	0.420	0.030	0.020	0.820	0.860	-	0.820	0.820	-
수수료선취-온라인(A-e)	0.350	0.210	0.030	0.020	0.610	0.580	-	0.610	0.610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1)	0.350	0.800	0.030	0.020	1.200	1.210	-	1.200	1.200	-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0.350	0.400	0.030	0.020	0.800	0.750	-	0.800	0.800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기관(C-i)	0.350	0.030	0.030	0.020	0.430	-	-	0.430	0.430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0.350	0.640	0.030	0.020	1.040	-	-	1.040	1.040	-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0.350	0.320	0.030	0.020	0.720	-	-	0.720	0.720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r)	0.350	0.600	0.030	0.020	1.000	-	-	1.000	1.000	-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re)	0.350	0.300	0.030	0.020	0.700	-	-	0.700	0.700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유재산(C-s)	0.350	0.040	0.030	0.020	0.440	-	-	0.440	0.440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기관(C-w)	0.350	-	0.030	0.020	0.400	-	-	0.400	0.400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디폴트옵션)(C-O)	0.350	0.160	0.030	0.020	0.560	-	-	0.560	0.560	-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0.350	0.190	0.030	0.020	0.590	-	-	0.590	0.590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0.350	0.170	0.030	0.020	0.570	-	-	0.570	0.570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S-R)	0.350	0.150	0.030	0.020	0.550	-	-	0.550	0.550	-
지급시기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개월 후급**					-	**사유 발생시**	-	-	**사유 발생시**

(주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다음과 같은 비용(증권거래 비용 및 금융 비용 제외)을 포함합니다. 단, 세부 지출 내역은 펀드 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감사보수, 채권평가보수, 펀드평가보수, 펀드결제수수료, 지수사용료, 해외거래예탁비용, 해외원천납부세액, 보관대리인보수, 법률자문비용, 부동산감정평가보수 등

(주2) 증권거래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다음과 같은 비용을 포함합니다. 단 세부 지출 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국내주식매매수수료, 국내채권매매수수료, 장내파생매매수수료, 기타매매수수료, 콜중개수수료, swap 매매수수료, 대차거래비용(대차관련수수료), repo 거래비용(repo 수수료), 해외주식매매수수료, 해외채권매매수수료, 해외수익증권 매매수수료, 해외파생 등 매매수수료, 해외워런트 등 매매수수료 등

(주3) 기타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증권 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 단위: 천원)
증권 거래비용	
금융비용	

(주4)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설정전인 종류 수익증권의 경우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을 추정할 수 없어 기재하되, 설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종류 수익증권의 경우 연율화된 추정치 비율 산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주5) 총 보수. 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6) 합성 총 보수. 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자투자신탁의 경우 해당 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포함)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7)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만 비용을 부담시키게 됩니다.
-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권 등의 매매수수료
2. 증권 등의 예탁 및 결제비용
3.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4.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5.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6.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단, 집합투자업자의 귀책사유인 경우 제외)
7. 증권 등 자산의 가격정보비용
8.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9.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 1,000만원 투자 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 (단위:천원)

종류	구분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선취-오프라인(A1)	판매수수료 및 보수 비용	183	269	359	550	1,102
	판매수수료 및 보수 비용(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83	269	359	550	1,102
수수료선취-온라인(A-e)	판매수수료 및 보수 비용	112	177	244	388	808
	판매수수료 및 보수 비용(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12	177	244	388	80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1)	판매수수료 및 보수 비용	122	249	381	659	1,452
	판매수수료 및 보수 비용(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22	249	381	659	1,452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판매수수료 및 보수 비용	82	167	255	444	989
	판매수수료 및 보수 비용(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82	167	255	444	98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기관(C-i)	판매수수료 및 보수 비용	44	90	138	241	542
	판매수수료 및 보수 비용(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44	90	138	241	54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판매수수료 및 보수 비용	106	216	331	574	1,269
	판매수수료 및 보수 비용(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06	216	331	574	1,269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판매수수료 및 보수 비용	74	150	230	400	893
	판매수수료 및 보수 비용(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74	150	230	400	89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r)	판매수수료 및 보수 비용	102	208	318	552	1,223
	판매수수료 및 보수 비용(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02	208	318	552	1,223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re)	판매수수료 및 보수 비용	72	146	224	389	870
	판매수수료 및 보수 비용(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72	146	224	389	87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유재산(C-s)	판매수수료 및 보수 비용	45	92	141	246	554
	판매수수료 및 보수 비용(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45	92	141	246	55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기관(C-w)	판매수수료 및 보수 비용	41	84	128	224	505
	판매수수료 및 보수 비용(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41	84	128	224	50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디폴트옵션)(C-O)	판매수수료 및 보수 비용	57	117	179	313	701
	판매수수료 및 보수 비용(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57	117	179	313	701

종류	구분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후취-온라인 슈퍼(S)	판매수수료 및 보수 비용	60	123	189	329	737
	판매수수료 및 보수 비용(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60	123	189	329	737
수수료미징구-온라인 슈퍼-개인연금 (S-P)	판매수수료 및 보수 비용	58	119	183	318	713
	판매수수료 및 보수 비용(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58	119	183	318	713
수수료미징구-온라인 슈퍼-퇴직연금 (S-R)	판매수수료 및 보수 비용	56	115	176	307	689
	판매수수료 및 보수 비용(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56	115	176	307	689

(주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총보수 및 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선취판매수수료 포함, 단, 후취 판매수수료는 제외).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수익률은 5% , 총보수 및 비용 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 자투자신탁의 경우 실제 소요되는 비용 반영을 위해 합성 총보수 및 비용을 적용하여 계산하였습니다.

(주3) 해외 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설정액이 상당히 낮아질 경우 해외 자산 매매 및 보관 등을 위한 기타 비용(해외보관대리인 비용, 해외거래 예탁비용 등)이 일반적인 수준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주4) 종류 A1형과 종류 C1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6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며 종류 A-e형과 종류 C-e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6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라. 보수 및 지급내역에 관한 사항

기준지표	보수 산정방식	한도 (%)	산출 주기	지급 시기	지급내역 (직전 회계연도 기준, %)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	-	-	-	-	-	-	-	-

※ 위의 표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65조 제1항 제2호의 방식에 따라 성과연동형 운용보수를 수취하는 투자신탁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1)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종류형 투자신탁의 경우는 해당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이익분배금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및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의 분배 유보는 2016년 4월 1일 이후에 결산.분배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해당 이익금의 분배 유보로 인한 주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기대 효과: 투자신탁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이익은 매년 과세하지 않고, 수익자의 일부 환매 또는 전부 환매 청구가 있을 때에 해당 환매청구 분에 대하여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이익이 발생하면 과세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는 수익자별 보유 수익증권에 대해 발생한 이익에 대한 과세시점을 환매시점까지 이연 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② 과세시점 이연이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 수익증권의 환매시점에 해당 수익증권의 보유기간 동안 유보된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이익을 포함한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와 같이 과세시점 이연의 효과가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라며, 이러한 경우 수익자별로 수익증권의 환매청구를 통하여 과세시점을 확정한 후 수익증권을 추가매수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세부적인 방법은 각 판매회사의 수익증권저축약관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적용되므로 각 판매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또한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

금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증권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3)수익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나. 분배금 지급에 관한 사항

(1) 분배금 지급방법

집합투자업자는 상기 가. (1)의 규정에 의한 이익분배와는 별도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따라 수익자에게 현금(이하 "분배금"이라 한다)으로 분배합니다. 이 경우 분배금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를 포함한다)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목표인출시점(2041년01월01일)이후에는 각 호에 따른 분배를 중단합니다.

1. 분배금: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분배금 및 경제상황, 유동성 등을 감안하여 집합투자업자가 분배하기로 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2. 분배기준일:최초설정일 익월부터 매월 20일. 다만,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합니다.
3. 분배금 지급일: 분배금 기준일로부터 제5영업일.

(2) 분배금의 지급연기

①상기 (1)의 규정에 의하여 분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분배금 지급일에 분배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분배금 미지급 사유 및 향후 처리계획을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1. 증권 등의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분배금에 충당할 현금마련이 곤란한 경우
2. 현저한 거래부진 등으로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할 수 없어 분배금에 충당할 현금마련이 곤란한 경우
3. 천재·지변 및 증권시장 등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할 수 없어 분배금에 충당할 현금마련이 곤란한 경우

②분배금을 지급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합리적인 판단으로 그 지급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신탁의 평가금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투자신탁 원본액의100%까지 잠식된 경우에도 분배금의 지급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에서 외국납부세액 발생 시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국세청으로부터 외국납부세액 환급 절차가 없으며, 원천징수의무자(판매회사 등)가 수익자에게 집합투자기구 이익 지급 시 수익자가 납부할 세액(이자·배당소득)에서 수익자별 외국납부공제 금액을 차감하여 원천징수 합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하는 날에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의 과세상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채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 및 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 (지방소득세 포함), 일반법인 15.4% (법인세 14%, 법인지방소득세 1.4%)

거주자 개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 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 (법인세 14% , 법인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4) 퇴직연금제도의 세제(퇴직연금 전용 종류 수익증권만 해당)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 시 관련 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 투자신탁 투자 시의 과세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A. 세액공제: 당해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해당 연도의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과 9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3.2%(지방소득세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함.

- 단,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해당 연도의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과 9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6.5%(지방소득세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함. (공제한도 상향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액부터 적용)

B. 과세 이연: 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 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아니하고, 연금수령 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함

C. 연금 인출 방식에 따른 과세: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지만 연금 외 수령의 경우 과세체계가 다름. 또한 연금 수령 시 사적연금액(퇴직연금, 연금저축 등)은 연간 1,500만원 한도 내에서 분리과세 가능함. 연금소득이 1,500만원 초과하는 경우도 종합과세 또는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함. (분리과세 선택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적용)

※ 퇴직연금제도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연금저축 종류 수익증권에만 해당)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 시 연금소득(연금수령 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 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에 따른 과세제외금액*을 인출하는 경우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과세제외금액: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서 연금계좌 내 금액 중 이연퇴직소득,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함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구분	주요 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만 원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계약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전환금액"이라 함

	) (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단, 이연퇴직소득 및 다른 연금계좌로부터 이체 받은 금액은 제외)
수령요건	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세액공제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만원 이내 세액공제13.2%(지방소득세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함. - 단,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6.5%(지방소득세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함. (공제한도 상향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액부터 적용)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금액의 10% 또는 300만원(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중 적은 금액에 대해 추가 세액공제 가능
연금수령 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나이에 따라 변경, 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한도	1,500만원(공적연금소득,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시 제외) 연금소득이 1,500만원 초과하는 경우도 종합과세 또는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함. (분리과세 선택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적용)
연금외수령 시 과세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해지가산세	없음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 사유	- 천재지변 -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에 한함)의 질병, 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 가입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제2호의 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 가입자가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나이에 따라 변경, 지방소득세 포함)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 수익자에 대한 세제혜택은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판매회사는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세제혜택을 위하여 수익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연금저축납입증명서(이하 "납입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합니다. 다만, 수익자의 가입자격위반 또는 투자한도초과 등 법령이 정하는 가입요건의 흠결이 확인된 경우에 판매회사는 납입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합니다.

※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금세제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통합연금포털(https://100lifeplan.fss.or.kr)의 '연금세제안내'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기재된 세율 및 과세 대상 금액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등에 근거하며 해당 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 내용에 따라 변경이 가능합니다. 또한 상기 기재되어 있는 세금 관련 내용은 수익자의 일부 환매, 중도 해지 시 적용 기준 및 내용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판매회사와 사전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설정 전이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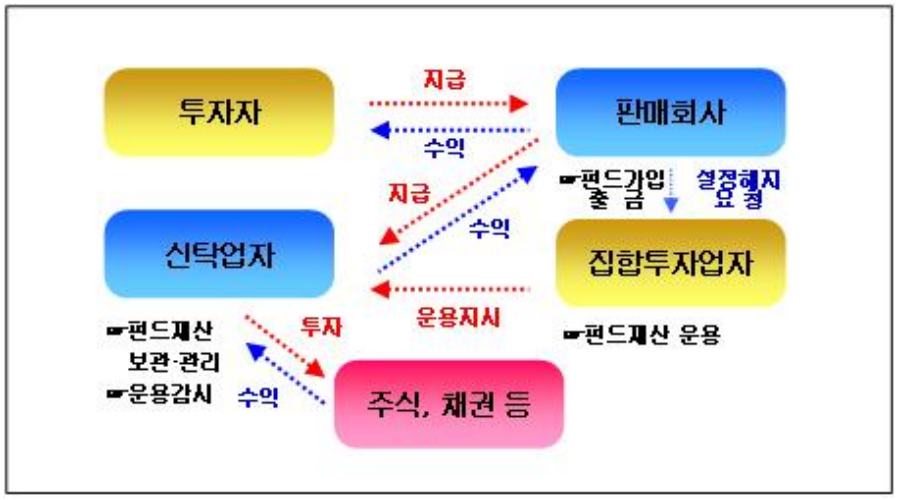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설정 전이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설정 전이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회 사 명	신한자산운용(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6, TP타워 23~26층 (대표전화 : 02-767-5777, 홈페이지 : www.shinhanfund.com)
회사 연혁	2022.01 신한자산운용㈜이 신한대체투자운용㈜ 흡수합병 2021.01 사명변경 (신한비엔피파리바자산운용(주)→신한자산운용(주)) 2009.01 신한 비엔피 파리바 자산운용(주) 출범 (신한 비엔피 파리바 투자신탁운용(주)과 SH자산운용(주)의 합병) 2008.09 신한금융지주그룹, 비엔피 파리바 금융그룹 합작운용사 출범을 위한 MOU체결
자본금	887억원
주요주주현황	신한금융지주(100%)

나. 주요업무

[주요업무]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운용지시 / 투자회사 재산의 운용

[선관의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 : 백만원)

[요약재무상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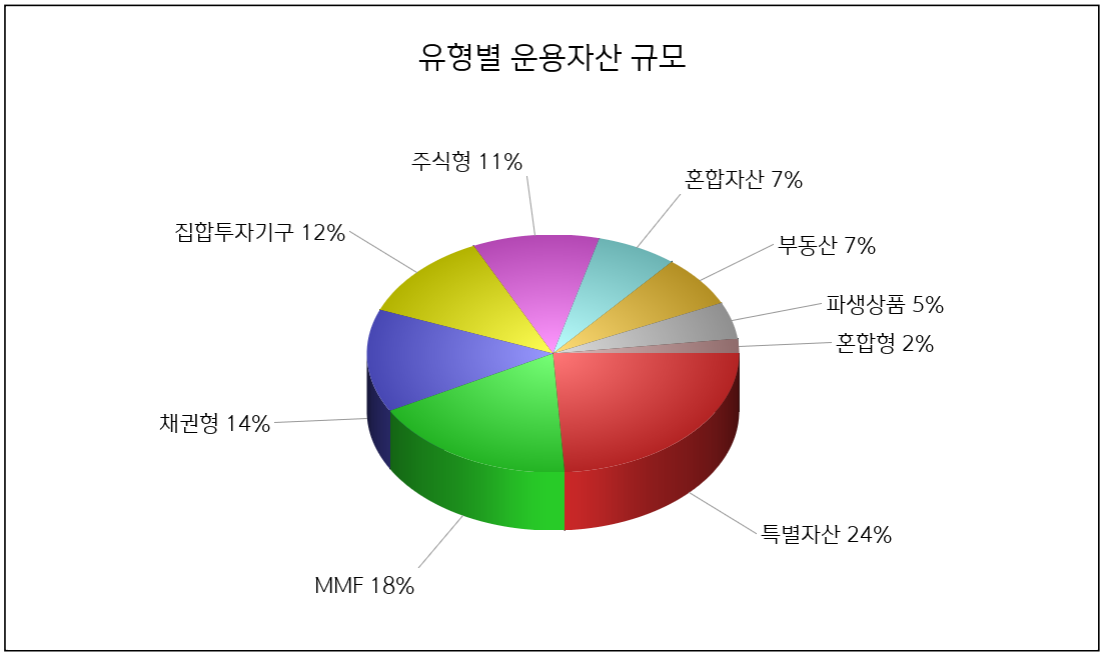
구분	제30기 2025년12월말	제29기 2024년12월말
현금및상각후원가측정예치금	50,922	45,403
유가증권	236,187	363,342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5,625	5,546
파생상품자산	207	41
기타자산	55,279	46,837
유형자산	33,091	42,150
자산총계	381,311	503,319
예수부채		200
차입부채	15	528
기타부채	87,959	186,263
부채총계	87,974	186,991
자본금	88,667	88,667
자본잉여금	59,980	59,980
자본조정	304	30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375
이익잉여금(결손금)	144,386	168,752
자본총계	293,337	316,328
부채와자본총계	381,311	503,319

[요약손익계산서]

구분	제30기 (25.01.01-25.12.31)	제29기 (24.01.01-24.12.31)
영업수익	197,447	241,409
영업비용	129,826	156,569
영업이익(손실)	67,621	84,840
영업외수익	6,371	572
영업외비용	1,458	1,793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72,534	83,618
계속사업손익법인세비용	16,523	17,615
계속사업이익(손실)	56,010	66,003
중단사업이익(손실)		
당기순이익(손실)	56,010	66,003

라. 운용자산 규모 (2026.07.31 현재 / 단위 : 억원)(일임자산제외)

구분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	MMF	총계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집합투자기구	파생상품					
수탁고	92,919	19,932	115,898	96,675	42,938	62,113	201,384	55,826	151,385	839,431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 업무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습니다.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가. 신탁업자

1)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중구 칠패로37 (대표전화 : 02) 2004-0000)
인터넷 홈페이지	www.hsbc.co.kr

2) 주요업무

(1) 주요업무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2)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의무)

①신탁업자는 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신탁계약, 투자설명서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③신탁업자의 확인사항
▶ 투자설명서가 법령·신탁계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의 여부 /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의 여부 /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 집합투자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 · 관리 중인 집합투자재산의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 / 수익증권의 추가발행시 기존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

(책임)
신탁업자가 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게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나.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신한펀드파트너스 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8 18,19,20층 (대표전화 : 2180-0400)
인터넷 홈페이지	www.shinhanfundpartners.com

2) 주요업무

(1) 주요업무
기준가격 계산에 관한 업무 및 보수인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2)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수익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게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주소	연락처	인터넷 홈페이지
한국자산평가	서울 종로구 율곡로 75	02-2251-1300	www.koreaap.com
나이스피앤아이㈜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9	02-398-3900	www.nicepni.co.kr
KIS자산평가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8	02-3215-1400	www.bond.co.kr
에프앤자산평가(주)	서울 종로구 인사동5길 29	02-721-5300	www.fnpricing.com

2) 주요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에프앤자산평가(주)의 경우 국내채권(CD, CP)만 평가 및 제공함)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게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총회 등

(1) 수익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종류형 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수익자에게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게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하며, 전자등록기관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모 투자신탁 수익자총회가 개최되어 그 수익자 총회의 목적이 자 투자신탁 수익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모 투자신탁 수익자총회와 동일한 시간 및 장소에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간주의결권행사"라 합니다)한 것으로 봅니다.

1. 수익자에게 법 시행령 제221조 제6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이상 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 시행령 제221조 제7항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 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개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③ 연기수익자총회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에서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 (단, 합병, 분할, 분할합병 및 그 밖에 법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 법 시행령 제217조에서 정하는 사항
-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신탁자산의 변경,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투자신탁의 합병(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및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반대매수청구권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법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법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법 시행령 제222조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는 위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의 종료일에 환매청구한 것으로 보아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 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 · 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 ·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신탁재산 명세서 / 수익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투자신탁재산 운용내역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는 법령 · 신탁계약 · 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간이 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 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 · 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 · 분석 · 확인 · 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합니다),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마. 재판관할

투자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투자자의 선택에 따라 투자자의 주소지 또는 투자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투자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규약 등 투자신탁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투자자는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에 미달하는 경우

※ 상기 임의해지 사항 중 소규모투자신탁(50억 미만)에 해당되어 투자신탁이 임의로 해지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집합투자규약 제48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때 상환대금은 해지일 등 약정된 지급일에 맞추어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최초 가입계좌 별로 상환대금을 지급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1)투자신탁의 설정현황

2)투자신탁재산의 운용현황과 수익증권의 기준가격표
3) 법 제87조제8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를 적은 서류
4)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 · 수수료와 그 비중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기구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2)투자신탁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3)투자신탁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교부됩니다.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o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 부채 및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
o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o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o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o 법 시행령 제92조 제3항 각 호의 사항 등. 다만, 회계기간 개시일로부터 3개월, 6개월, 9개월이 종료되는 날을 기준일로 하여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동 시행령 제3항 제2호 및 제7호의 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2)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3)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4)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자산보관 · 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 · 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투자자에게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교부됩니다.
1)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2)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3)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4) 법 제247조 제5항 각 호의 사항

5) 법 시행령 제270조 제2항 각호의 사항 등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보관 · 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투자자가 자산보관 · 관리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2)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보관 · 관리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3)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보관 · 관리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4)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보관 · 관리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 · 신탁업자 · 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법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4.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6. 집합투자업자의 변경(법시행령 제217조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7.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8.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9.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상기 2호 및 6호에 해당되는 경우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해진대로 다음과 같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다음 각 호외의 사유로 제42조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는 수익자를 상대로(제35조제4항에 따른 신탁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요청하는 경우는 수익자 및 신탁업자로 한다) 손실·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가 법령·신탁계약서에 중대한 위반 행위를 한 경우
2.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투자신탁재산에 중대한 손실 또는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3.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에 동의한 경우

(2) 수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 (www.shinhanfund.com) ·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집합투자업자 · 판매회사의 본 · 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

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
3. 법 시행령 제93조제2항에서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4.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신탁계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 및 양수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법 시행령 제262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고,게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8.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서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9.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10.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 · 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1)법 시행령 제2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2)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 다만,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지상권 · 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 · 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 · 변경
4)금전의 차입 또는 금전의 대여
11.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합니다.
- 법인의 합병, 영업의 양도 · 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이익에 명백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에서 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100분의 5 또는 100억 원 이상을 소유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하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다음 내용을 영업보고서에 기재하여 기록 유지해야 합니다.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 해당사항 없음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구분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 거래	집합투자업자인 신한자산운용㈜의 중개회사 선정기준입니다. 분기(필요시 변경가능)별로 내부 중개기관위원회(Broker Committee)에서 아래의 선정기준에 따라 중개회사를 선정합니다. - 리서치의 양과 질 - 새로운 섹터 아이디어 또는 새로운 업무범위 - 거래 실행력 - 투자자의 최우선 가치 - 비용/수수료 구조 - 거래체결의 질과 완벽함 - 신용과 평판의 질 - 중개기관과 집합투자업자의 IT/통신 연결 - 중개기관의 내부 준법감시 절차 선택된 중개회사들의 거래량 분배는 내부 기준을 바탕으로 투자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공정하게 배분합니다.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9조 제1호 가목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7-1조의2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의무투자

- 집합투자업자는 본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인 '신한마음편한RIF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의 다른 자투자신탁인 '신한마음편한RIF2040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를 통해 아래와 같이 고유재산을 투자합니다.

*'신한마음편한RIF2040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를 통한 고유재산 의무투자에 관한 사항

- 투자주체 : 신한자산운용
- 투자목적 : 투자자와 운용사간 펀드 성과 공유장치 마련
- 투자집행시기 :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 투자금액 : 2억원
- 투자기간 : 투자일로부터 최소 3년 이상(다만,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
- 투자금 회수계획 등 :

① 상기 투자기간이 경과한 시점부터 2회 이상 분할하여 회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투자금이 집합투자기구 원본액의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에는 일시 회수 가능합니다.

② 1회에 회수하는 금액은 고유재산 투자금의 100분의 50 이하로 하고, 1개월 이상이 경과한 후 다음 회차의 투자금을 회수합니다. 투자기간 종료 1개월 이전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자산운용보고서에 기재하여 투자자에게 통지하고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③ 투자금 회수 시에는 회수결과를 자산운용보고서에 기재하고 자산운용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

-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존속기한이 3년 미만인 집합투자기구로서 고유재산 투자금을 존속기한 동안 유지하는 경우
- 집합투자기구 설정ㆍ설립 후 3년 이내에 법 제192조제1항 단서, 같은 조제2항, 제202조제1항 또는 제221조제1항에 따라 해지ㆍ해산하는 경우
- 집합투자기구 설정ㆍ설립 후 3년 이내에 다른 모집합투자기구의 자집합투자기구로 편입되거나 영 제245조제5항에 따라 다른 모집합투자기구에 이전하는 경우
- 집합투자기구 설정ㆍ설립 후 3년 이내에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된 경우로서 변경된 집합투자업자가 고유재산 투자금을 출자ㆍ납입하여 집합투자기구 설정ㆍ설립 후 3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참고] 펀드용어의 정리

용 어	내 용
금융투자상품	이익 추구 혹은 손실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집합투자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금융투자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투자회사	설립자본금을 바탕으로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수익증권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증권으로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순자산	펀드의 운용 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주식, 채권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폐쇄형	환매가 가능하지 않은 펀드를 말합니다.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단위형	투자신탁의 모집시기(판매기간)이 한정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가입할 수 없는 펀드입니다.
모자형	운용하는 펀드(모펀드)와 이 펀드에만 투자하는 펀드(자펀드)로 구성된 펀드형태를 말합니다. 자펀드는 모펀드 외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종류형	멀티클래스 펀드로서 자금납입방법, 투자자자격, 투자금액 등에 따라 판매보수 및 수수료를 달리 적용하는 펀드입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자본이득	펀드 운용 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 차익을 말합니다.
배당소득	펀드 운용 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을 말합니다.
신탁보수	투자신탁의 운용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재산을 운용 및 관리해 준 대가로 투자자가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신탁보수에는 운용보수, 판매보수, 수탁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상품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성과보수	현행 법은 불특정다수의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펀드(공모펀드)의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펀드의 성과에 따라 추가적 보수(성과보수)를 수취하는 것을 매우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펀드 혹은 투자일임계약의 경우 약관(계약)에 따라 성과보수의 수취가 가능합니다. 펀드매니저가 성과보수가 있는 사모펀드, 투자일임계약과 성과보수가 없는 공모펀드를 함께 운용함에 따라 성과보수가 있는 펀드 등의 투자수익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 투자노력을 기울이는 등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판매수수료	투자자가 펀드 매입시, 판매회사에 일회적으로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상품에 대한 취득 권유 및 설명, 투자설명서 제공 등에 수반되는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펀드 가입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후취판매수수료	펀드 환매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환매수수료	펀드를 일정 기간 가입하지 않고 환매할 시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그 비용은 펀드에 귀속됩니다.

설정	펀드에 자금이 납입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신규설정과 추가설정이 있습니다.
해지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투자신탁의 신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스팟펀드처럼 약속한 수익률에 도달할 경우 펀드의 자산을 모두 처분,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나눠주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월급을 받을 때 월급(소득)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는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가 국가를 대신해서 미리 세금을 징수하고 세금 납입일(통상 매달 10일)에 일괄적으로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환매	만기가 되기 전에 맡긴 돈을 되찾아 가는 것을 환매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투신제도상 투자자가 중도인출을 요구할 경우 투신사가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단위형(폐쇄형) 상품의 경우 일정기간까지 중도해약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익자총회	신탁계약상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가입자들이 모여서 의사 결정을 하는 기구.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 규약에 따릅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 코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에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 코드를 말합니다.
비교지수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레버리지효과	차입 등의 방법으로 투자원본보다 더 많이 투자함으로써 투자성과의 크기를 극대화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상승하면 원본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이 더 크지만 하락하면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선물환거래	미래의 거래 환율 가격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정해놓은 거래를 말합니다.
금리스왑	금융 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동안 상호 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하며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신주인수권부 사채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합니다.
전환사채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 기간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주식워런트	주식워런트는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증서로서 주식옵션과 유사합니다.
환매조건부 매수/매도	환매조건부 매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환매조건부 매도: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